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제2025-110호
2025년 12월 30일(화)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5-569호	지방하천 점용 허가(변경) 고시(중흥천)(제2015-9호),(남수천)(제2015-10호)
○ 여수시 고시	제2025-570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여수죽림1지구 A6블록)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5-3871호	2026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5-3875호	소하천 점용허가 기간연장 공고(덕개천)(제2021-15호)
○ 여수시 공고	제2025-3881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주)동강플랜텍
○ 여수시 공고	제2025-3883호	여수 소제지구 A3블록 주택건설사업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5-3884호	여수 소제지구 A3블록 주택건설사업 감리자(소방) 모집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5-3885호	2026년도 새기술 보급 실증시험포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5-3886호	여수 소제지구 A3블록 주택건설사업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5-3887호	여수 소제지구 A4블록 주택건설사업 감리자(건축) 모집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5-3888호	여수 소제지구 A4블록 주택건설사업 감리자(소방) 모집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5-3889호	여수 소제지구 A4블록 주택건설사업 감리자(전기) 모집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5-3895호	2024년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폐업어선 기관, 장비 등 일괄매각 전자입찰 공고(2차)

훈 령

○ 여수시 훈령	제436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정

회람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5-569호

지방하천 점용허가 고시(중흥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방하천 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여 수 시 장

□ 허가내용

1. 하천의 명칭	다음 허가내역 참조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허가내역

허가 번호	하천명	점용자		점용내용						비고
		주소	성명	위치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제2015-9호	중흥천	여수시 여수산단2로 218	금호피앤비화학(주)	중흥동 1691	173		배관 및 파이프랙 설치	당초	2015. 11. 1. ~ 2025. 12. 31.	
								변경	2015. 11. 1. ~ 2030. 12. 31.	
제2015-10호	남수천	여수시 여수산단2로 218	금호피앤비화학(주)	월화동 163	당초	367	원료 이송용 배관 설치	당초	2015. 11. 1. ~ 2025. 12. 31.	
					변경	448.4		변경	2015. 11 .1. ~ 2030. 12. 31.	

여수시 고시 제2025 - 570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여수죽림1지구 A6블록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4차) 신청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2. 30.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 여수시 죽림1지구 A6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비오엠건설(주) 대표자 이경민
3.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죽림1지구 A6블록
4. 사업개요
   가. 대지면적 : 29,198.4㎡
   나. 건축면적 : 5,654.0678㎡
   다. 연 면 적 : 90,890.6985㎡
   라. 규 모 : 지하2층・지상10~20층, 주9동, 626세대
5. 사업기간 : 2026. 6. 1. ~ 2029. 4. 30.
6. 관계서류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수시 허가과(☎659-4095)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공고 제2025 - 3871호

2026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여 수 시 장

1. 융자규모 : 100억 원

○ 대출취급 기관 : 8개 협약 은행(여수시 소재 본점 및 지점)

- 광주, 농협, 기업, 우리, 국민, 하나, 신한, 새마을금고

※ 대출 구비서류, 대출금리, 이자불입, 상환방법, 담보 및 보증서 제공 등 대출취급은 은행별 여신 규정에 의함.

2. 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 **지원대상**

- 여수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 **대상업체**

①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공장 미등록 제조업체의 경우 소기업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 및 제조시설인 경우에 한함)**

② 제조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산업체【별표 1, 2, 3】

③ 중소기업 협동조합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
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
⑥ 지역특산화상품 생산업체(전통공예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지역 원· 부자재를 활용한 제조업체)
⑦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별표 4】

지원제외대상

· 多업종 경우 해당업종 매출액(2년 평균) 비중이 30%미만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단, 재해로 휴업 중인 기업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지방세 체납 등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 대상 사업

①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사업전환) 사업자금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 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추진에 필요한 기계 장치 구입 소요자금

②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일반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 및 재난피해 복구 직접비용 등

③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자금
- 신제품, 신기술, 품질개선, 공장개선 등 자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 대학, 연구기관 등과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장비 설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기업 선정

○ 신청기업별 융자지원 대상 적격여부 확인과 당해기업 신용상태, 자산, 경영실태 등을 참작 선정

- 기 지원 이력있는 기업체는 **상환종료일부터 2년간 선정 제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타 자치단체에서 동일정책 자금으로 **중복지원 받은 기업체는 선정 제외**(단, 타 정책자금과 신청 자금 합계액이 5억 원 이하거나, 매출·수출·고용율 중 하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에는 가능)

* 매출 50% 이상, 수출 20% 이상, 고용율 20% 이상

4. 지원내용

< 일반지원(공통) >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 원 이내(매출액의 50%범위 내)

※ 단,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는 신청액 전액(2억 원 이내) 융자 추천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연 3.0% 지원(2년간)

< 여수시-IBK기업은행 동행협약 지원 > * IBK기업은행 보증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면서, IBK기업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연 3.0% 지원(2년간), 보증료 1.2% 지원(기업은행)

○ 그 외 정하지 않은 사항 및 향후 변동사항은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일반지원 공고를 따름

5. 대출취급 기한

○ 융자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

○ 대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 기한 내 사전 변경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6. 융자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수시분기별*** 접수)

*** 1분기(1. 1. ~), 2분기(4. 1. ~), 3분기(7. 1. ~), 4분기(10. 1. ~)**

○ 접 수 처 :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기업지원팀

- 연락처 : ☎ (061)659-3614, FAX (061)659-5816
- 주 소 :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경제일자리과(59689)

○ 구비서류

필수 서류	① 신청서【별표 6】및 사업계획서【별표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표 8】 ②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2개년간 재무제표 1부 -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은 부가가치세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원, 영업운영실적
선택 서류 *(해당 기업)*	③ 장애인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발급) ④ 여성기업 확인서(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발급) ⑤ 일자리창출 기업의 경우 "일자리창출기업 신청서(별표9)" 및 증빙서류 ⑥ 사회적경제기업(인증서 또는 지정서 사본)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⑦ 투자·실시협약 및 개별법 승인, 인·허가 증빙서류(관광숙박업 등 해당업체) ⑧ 가족친화기업(가족친화기업 인증서 또는 지정서 사본)
공무원 확 인	⑨ 공장등록증(미등록 공장의 경우 건축물대장 확인) ⑩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⑪ 스타기업 및 전남형 강소기업(자체 확인)

7. 기타사항

① 지원 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② 자금 추천 후 (대출 실행 전) 기한 연장,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 신청서**【별표 10】** 제출해야 함

③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동 시행규칙,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④ 자금 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⑤ 자금융자 신청서는 여수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음.

※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 산업경제 ➡ 기업정보/ 지원정책 ➡ 자금지원

【별표 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10차 개정)에 의한 제조업 (C10~C34)

제조업(C10~34)

한국표준산업분류	업 종 명	규모기준	비고
계	25개 업종		
C10	식료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C11	음료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C12	담배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C24	1차 금속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C28	전기장비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C32	가구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C33	기타 제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별표 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
◦ 폐기물 처리업	382
◦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	383
◦ 도로화물 운송업	493
◦ 소화물전문 운송업	494
◦ 해상운송업	501
◦ 내륙 수상 및 항만 운송업	502
◦ 항공 운송업	51
◦ 보관 및 창고업	5210
◦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13
◦ 화물취급업	5294
◦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2
◦ 화물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52993
◦ 산업설비,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74212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임대업은 제외)	76390
◦ 하수처리업	3701
◦ 분뇨처리업	3702
◦ 통신장비 수리업	9512

【별표 3】

지식기반 서비스업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 환경정화 및 복원업	3900
◦ 도매 및 상품중개업(단, 무역관련업에 한함)	46
◦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 한함)	5510
◦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5913
◦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5914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5920
◦ 지상파 방송업	6021
◦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022
◦ 공영 우편업	6110
◦ 유선통신업	6121
◦ 무선 및 위성통신업	6122
◦ 기타 전기통신업	6129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
◦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6202
◦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
◦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제조업 지원 목적만 해당)	6312
◦ 뉴스제공업	6391
◦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제조업 지원 목적만 해당)	6399
◦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7011
◦ 공학 연구 개발업	7012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
◦ 광고대행업	7131
◦ 기타광고업	7139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0
◦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서비스업	7153

지식기반 서비스업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1
◦ 엔지니어링서비스업	7212
◦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
◦ 전문 디자인업	7320
◦ 사진촬영 및 처리업	7330
◦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390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
◦ 경비, 경호 서비스업	7531
◦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1
◦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75992
◦ 포장 및 충전업	75994
◦ 기타스포츠 서비스업	9119
◦ 공연시설 운영업	9011
◦ 공연단체	9012
◦ 자영 예술가	9013
◦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199
◦ 도서관, 기록보전소 운영업	90211
◦ 박물관 운영업	90221
◦ 식물원, 동물원 운영업	90231
◦ 실내경기장 운영업	91111
◦ 실외경기장 운영업	91112
◦ 자동차종합수리업	95211
◦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212
◦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2
◦ 가전제품 수리업	9531
◦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539

【별표 4】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 관광숙박업의 경우 신규사업자 지원 가능함

☞ 신규사업자는 해당부서에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제출하여야 함

※ 관광숙박업의 범위 :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가족호텔, 호스텔, 게스트하우스

○ 기타 업종 중 투자·실시협약기업

○ 여수시 스타기업, 전남형・글로벌 강소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별표 5】 이에스지(ESG) 관련 분야별 ISO 인증 종류

E (환경 보호)	**환경경영**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기후변화** ISO 14064-1 온실가스 산정 ISO 14067 탄소발자국 ISO FDIS 14030-1 녹색채권	**자원보호** ISO 14046 물 발자국 ISO 46001 물효율관리 ISO TS 22451 회토류 재활용
	환경오염 ISO 21070 해양-선상쓰레기 ISO CD24161 폐기물 수집 수송 ISO 63000 전기전자 유해물질	**친환경기술** IEC 62430 친환경설계 ISO 13065 바이오에너지 지속가능성	**이해관계** ISO 14063 환경경영 의사소통 ISO WD 59004 순환경제 프레임워크
S (사회적 책임)	**책임경영** ISO 26000 사회적책임 ISO IWA 26 사회적책임경영	**인권노동** ISO TR 30406 지속가능고용 ISO DIS 25550 고령인력지침 ISO 30415 인적 다양성 포용	**안전보건** ISO 45001 안전보건경영 ISO 45003 심리적 건강관리 ISO 16000-40 실내공기질
	제품안전 ISO 22301 비즈니스 연속성경영 ISO 10004 고객만족 ISO 13485 의료기기 품질경영	**정보보호** ISO/IEC 20000-1 IT서비스경영 ISO/IEC 27001 정보보호경영 ISO/IEC 27701 개인정보보호	**이해관계** ISO 37101 지속가능발전경영 ISO 44001 비즈니스 협업관계 ISO 37106 공동체 지속가능
G (지배 구조)	**윤리경영** ISO 37001 부패방지경영 ISO FDIS 37002 내부고발관리 ISO 37301 준법경영		**조직구조** ISO 31000 리스크관리 ISO FDIS 37000 조직거버넌스 ISO 41001 시설관리
	재무회계 ISO 17442-1 금융 법인식별기호 ISO CD 32210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		**이해관계** ISO/IEC 38500 IT 거버넌스 IEC 60300-1 신뢰성경영 ISO 18091 지방정부 품질경영

【별표 5】

중소기업 발전자금 지원 신청서

일반 신청 □ 기업은행 동행지원 신청 □

1. 업 체 명				
2.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3. 대 표 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4. 신 청 금 액	백만원	타 정책자금 사용여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전라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 )	
5. 대출희망은행	광주은행( ) NH농협은행( ) 우리은행(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새마을금고 ( )		지점	
6. 자 금 용 도	구조고도화 사업자금 □ 경영안정자금 □ 기술개발 사업자금 □			
7 . 보 증 방 법	일반 신용 □ 보증기금 보증서(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부동산 □			

7. 업 체 현 황

입 지 조 건	국가산단 □ 지방산단 □ 농공단지 □ 기 타 □					
업 체 구 분	일반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창업기업 □ 일자리 창출기업 □ 강소기업 □ 스타기업 □					
생 산 실 태	업 종		주요생산품목			
	생 산 액	백만원	수 출 액	백만원($ 천달러)		
종 업 원	명 (생산직 : 명 사무직 : 명) 성별 (남: 여:)					
재 무 상 태	총자산	백만원	자가 자본	백만원	부 채	백만원
특 기 사 항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뒷면>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정보이용동의서 3. 2년간 재무제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공장등록증명서(또는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별표 6】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융자금의 용도

□ 구조고도화 사업자금 □ 경영안정자금 □ 기술개발 사업자금

2. 사업내용(용도에 맞게 요목 위주로 작성)

○

○

○

3. 자금 사용 계획

○ 신 청 액 :　　백만원

○ 발전자금 사용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

-

4. 융자금 상환계획

○

5. 기　타(사업의 장래전망 및 기대효과 등)

○

202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 사업계획서는 1매만 작성(별도세부계획서 첨부 지양)

【별표 7】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여수시장 귀하

□ 본인은「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융자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기업체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표 8】

중소기업발전자금 변경신고(승인)신청서

지원자금명	여수시중소기업발전자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소 재 지		전화번호	회사) H·P)
변 경 사 유	(상세하게 기재)		
변 경 전		변 경 후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발전자금 변경신고(승인)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대표자 또는 주소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전화(061)659-3614 팩스(061)659-5816

※ 팩스 전송 후 반드시 수신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소하천 점용 허가 공고[덕개천][제2021-15호]

여수시 공고 제2025-3875호

「소하천정비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시설의 점용을 허가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여 수 시 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다음 허가내역 참조		
	대표자 (성 명)		주소	
소하천명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면적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기간			
	목적 및 사유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허가내역

연번	허가번호	하천명	점용자		점용내용					비고
			성명	주소	위치	면적(㎡)	점용사항	점용기간		
1	2021-15	덕개천	광주지방기상청	광주 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71	돌산읍 서덕리 284-5	225	자동기상관측 시설 설치	당초	2021. 5. 28. ~ 2025. 12. 31.	
								변경	2021. 5. 28. ~ 장비 철수 시(영구)	

여수시 공고 제2025-3881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 (주)동강플랜텍(이정주)
2. 영 업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소라면 봉두로 314
3. 법 인 등록번호 : 206211-0057254

업종명	등록번호	주력분야	등록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여수-25-가-03	토공사	2025. 12. 29.

2025년 12월 30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2025-388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 [이하 "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 .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2. 30. ~ 2025. 1. 6.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 여수 소제지구 A-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여수소제피에프브이(주) 대표자 박병엽,이탁기 (☎062)510-2114),
중흥토건(주) 대표자 이경호 (☎062)510-2237)

다. 시 공 자 : 중흥토건(주) 대표자 이경호 (☎062)510-2237),
우미건설(주) 대표자 배영한,조성준,김성철 (☎02)6914-1502),
아주건설(주) 대표자 김수홍,김용환 (☎061)381-6323),
남해종합개발(주) 대표자 김응서,유영걸 (☎062)220-2500)

라. 설 계 자 :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 대표자 김재석 (☎02)2047-3000),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유세한 (☎02)3438-8000),
(주)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이주경 (☎062)574-6467)

마.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여수소제지구 A3
○ 대지면적 : 52,617.0000㎡
○ 연 면 적 : 208,864.6781㎡
○ 규 모 : 공동주택(아파트) 14개동(지하5층, 지상25층) 및 부대 · 복리 · 근린생활시설
○ 세 대 수 : 공동주택(아파트) 1,095세대
○ 공사기간 : 2026. 03.09. ~ 2029. 05. 08.(38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5. 12. 12.

바. 사 업 비

○ 총사업비 : 586,783,735천원
○ 대 지 비 : 156,632,987천원
○ 총공사비 : 315,907,828천원(일반관리비, 이윤, 발코니 확장 공사비 포함 / 부가가치세 미포함)
1) 건축감리 대상 공사비 : 275,253,869천원
2)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 : 40,653,959천원
※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공사의 비용임.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는 별도 첨부자료 참조

사. 감리대가 : 6,206,424,238원(건축공사비의 2.2548% 적용, 부가가치세 미포함)
※ 기초금액 : 6,020,231,511원(감리대가기준의 97%)
※ 소수점 이하(원단위 미만) 절사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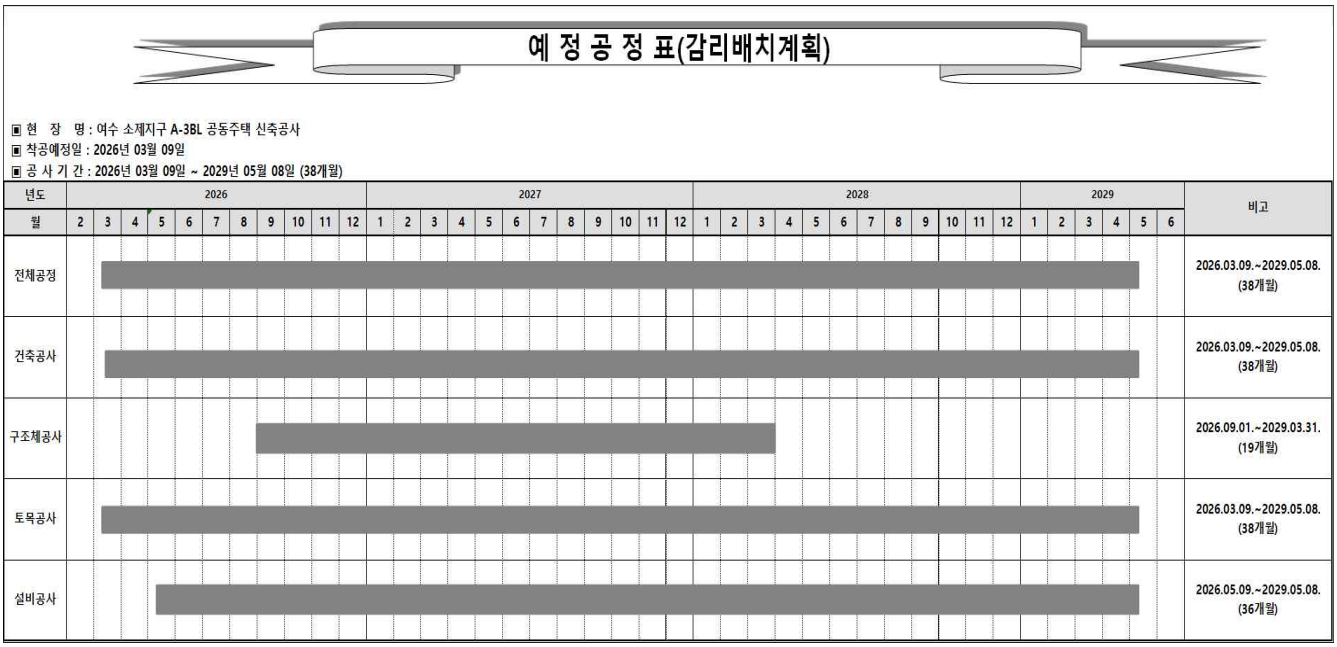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1. 7.(목) 09:00 ~ 2026. 1. 9.(금) 12: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방법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

라.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 지정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은 '감리대가' 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 1. 9.(금) 14:00부터,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한 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우리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https://www.yeosu.go.kr/, 열린시정>여수소식>고시공고)에 결과가 게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절 받지 않음.

6.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1. 12.(월) 09:00 ~ 2026. 1. 14.(수)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 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날인 필)**

※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기간내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사실확인 서류 제출 후, 사실확인 서류를 PDF로 요청할 수 있음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 15.(목) 09:00 ~ 2026. 1. 19.(월)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

1)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감리자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상기 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절 받지 않음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따라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다. 비상주감리원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2)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유 경력 및 실적점수를 "0" 점 처리함.

3) 비상주감리원의 인 · 월수는 총배치 인 · 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원은 다른 공사용역에 비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가 가능하나, 당해 공사를 포함하여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면 실격 처리됨.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바. 지역가점 : 해당없음

8-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① 사업주체 “여수소제피에프브이㈜” 외 1인의 행정처분 이력

- 사업계획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② 시공자 “중흥토건㈜” 외 3인의 행정처분 이력

- 사업계획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0.41점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건설업체 정보조회 결과

나.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 없음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첨부) ⇒ 개찰 ⇒ 우선순위(예비1~3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실시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나. 감리자 지정 방법

1)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제10조에 따릅니다.

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상기 2)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1회에 한해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6) 예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됩니다.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7)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 지정기준 제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10. 재무상태 평가

가. 평 가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등급으로 평가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평가대상 감리원은 명단 기입 /비평가 대상 감리원, 신규 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입)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 신청서 제출시에는 세부평가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5)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 [별지 제1호 서식]감리원 명단(비실명인 경우 직무분야 및 등급표기)과 배치계획이 상이한 경우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시 부적합 처리(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오니 비평가대상 및 가점을 위한 추가 배치감리원의 경우 반드시 직무분야 및 등급을 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1)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①~⑯까지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2024.10.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2)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분야별 세부평가[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첨2, 3, 4

3)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4)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유의사항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를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을 제외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유의사항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

건축사협회(지회포함)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기간 동안 소속된 대표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의 행정제재 유무확인서 필요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해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처리 함.

6)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당해 주택건설 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 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 해당업체에 한함.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및 본 공고상의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8) 감리원배치계획

: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5) 및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9) 업무중첩도 관련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배치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10)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 및 감리원이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교체율 및 교체건수(계획공정 만료시점은 사업승인이 변경되어 계획공정이 변경된 경우라도 감리자 모집공고시 제출된 계획공정 만료시점을 말함)

11) 확인서 :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

1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총괄감리원 서명·날인)

: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13) 감리원 관련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14) 기타증빙자료

: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또는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사무소 등록증(감리전문회사만 등록된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

증명서(감리자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15) 분야별 세부평가서 : 분야별 세부평가서 및 별첨 제출

다. 유의사항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3)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토목,기타설비), 비상주감리원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 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를 평가하므로 평가대상 감리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실격처리 함.

4)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 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 경력 · 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5)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6)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과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로 평가하고, [별첨 2], [별첨 3], [별첨 4]는 평가의 원활을 위해 임의로 제출받는 것으로 감리자 지정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7)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감리업무수행실적, 행정제재여부,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회사)가 「감리자지정기준」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 · 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해당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 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4조제1항의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5)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통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우리 청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즉시 폐기처분합니다.

라.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 ·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있고,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감리 응모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다음 작성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배치 부적정으로 평가합니다.

1)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 공고 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법적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를 표시하고(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 및 배치율도 구분 표시), 참여감리원 전원(비평가대상감리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2) 비평가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 건축, 건축, 설비, 토목분야 순서로 해당 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며, 5번째부터는 구분 없이 배치 가능합니다.「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한 감리인 · 월수를 초과하여 배치하는 경우 비평가대상 감리원 전체 중 마지막 1명은 부분 배치 가능합니다.

(단, 신규감리원 및 비평가대상 비상주감리원은 배치순서에 관계없이 배치 가능함)

3)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 기간 동안(신규·비상주감리원은 건축1인 이상 배치) 배치하여야 하고,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합니다.

4)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급의 일일임금을 1로 기준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사.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감리자지정

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와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지정기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 처리합니다.

아. 감리원 교육훈련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에 해당하는 교육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일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단,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며, 교육기간 만료시점이 공고 당일에 걸치는 경우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의 교육일수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자.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1)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와 근무형태, 직책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2)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함), 최근 3년 이내의 기간 산정은 당해 공사의 착공일·감리수행일(착공일과 감리수행일자가 상이한 경우 착공일 우선 적용)을 기준으로 하며, 수주한 금액은 공사진척률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3) 토목분야감리원의 경력 산정 시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 설계, 시공,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감독(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 소속 직원) 업무 및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 공무원 등의 경력 인정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공동주택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100%를,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건설공사, 토목건설공사 또는 기타설비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80%를 감리원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차. 감리자소속 감리원 및 참여감리원(최근 1년간)중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 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배치계획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 교체 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카.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일 내 감리계약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

는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계약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파.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 분야의 공종에 해당여부, 최초 출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와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공종 해당 여부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하. 응모서류는 감리원배치계획 및「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그 이외에는 제출한 자기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거. 감리자 응모서류 심사, 감리자지정, 감리운영 및 계약 등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거나 본 공고문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 기준 및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 해석에 따릅니다.

너. 비상주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포함)에 총괄감리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분야별감리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실격 처리 됩니다.

더.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 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러. 감리자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로 지정하고, 감리질서 문란행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부실벌점 등 행정제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 제14조에 따라 조치 할 수 있습니다.

머.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지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통보 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버. 당해 감리자지정권자의 필요에 따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해당 지자체 등 타 기관으로 최근 1년간 타 시·군의 감리자지정 및 감리원중복배치 여부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사실조회(최근 1년간 교체여부 포함)하오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감리원 배치기간의 감리업무 중첩도는 모집공고일 이전에 협회에 신고한 사항을 포함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감리원 배치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첩도에 포함합니다.

어. 본 용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총괄, 다. 감리자, (8)적격여부 중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 사항에 해당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르며, 공고내용, 평가표 등이 예전 기준, 자료이거나 현행과 맞지 않는 사항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 최신기준을 적용하며, 현행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 시 홈페이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입찰정보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 나라장터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061-659-4179)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1.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예정공정표 각 1부. 끝.

접수번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신청

(사업명 : 여수 소제지구 A-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5. . .

[건설기술용역업자(감리회사)명]

[별지 제1호서식]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		

설 계 자	성 명		상 호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개설신고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전화번호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신규(4)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유의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210㎜×297㎜[백상지(80g/㎡)]

사실확인 서류	감리자(회사)	①재무상태 건실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시 포함)
		⑦업무중첩도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⑪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감리원	⑫자격증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학력증명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⑭경력증명서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교육이수 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유의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상기 구비서류중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별지 제2호서식]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별지 제2호서식]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신청자	평점 지정권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감리자 (감리 회사)	재무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	5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12			예) 100(억원)
	행정제재			9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2			예) 특허 0건
		기술개발투자실적		2.5			예) 00(%)
		교육훈련		0.5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			2			예) 건축 0명
	교체빈도			7			예) 00(%)
	가점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1)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자
		지역가점		(1)			예) 00도(道),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		(1)			예) 현상 00(점)
	계			40			
	적격여부	감리원배치계획		적・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업무중첩도		적・부			예) 중복배치 없음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적・부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감리원	총괄감리원	등급		6			예) 특급건설기술자
		경력 및 실적		18 (15)			예) 00(년)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면접(발표)		(3)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3			
		가점	자격가점	(0.2)			예) 건축사, 00기술사
		감점	행정제재	(-2)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27			
	분야별감리원	등급	건축	2			예) 특급건설기술자
			토목	2			예) 고급건설기술자
			기타설비	2			예) 고급건설기술자
		경력 및 실적	건축	7			예) 00(년)
			토목	7			예) 00(년)
			기타설비	7			
		자격가점	건축	(0.1)			예) 건축사, 00기술사
			토목	(0.1)			
			기타설비	(0.1)			
		감점	행정제재 건축	(-1)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행정제재 토목	(-1)			
			행정제재 기타설비	(-1)			
			교체빈도 건축	(-0.5)			예) 00(건)
			교체빈도 토목	(-0.5)			
			교체빈도 기타설비	(-0.5)			
		소 계		27			
	비상주감리원	등급		2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경력 및 실적		4			예) 00(년)
		감점	행정제재	(-1)			예) 업무정지 00(월)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6			
	계			6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7210㎜×297㎜[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1]

분야별 세부평가(우선순위 상위 3개업체에 대하여만 제출)

※ 산출근거란에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자 평점란에만 기재합니다

가. 감리자(감리회사)

<table>
<tr><th rowspan="2">항 목</th><th rowspan="2">배점</th><th rowspan="2">적 용 기 준</th><th colspan="2">평가점수</th></tr>
<tr><th>신청자</th><th>지정권자</th></tr>
<tr><td>소 계</td><td>40</td><td>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td><td></td><td></td></tr>
<tr><td>(1) 재무상태 건 실 도</td><td>5</td><td>
○ 평가 및 산정방법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table>
<tr><th>점수</th><th>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th><th>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th><th>기업 신용평가등급</th></tr>
<tr><td rowspan="5">5.0</td><td>AAA</td><td>-</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td></tr>
<tr><td>AA^{+}, AA^{0}, AA^{-}</td><td>A1</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td></tr>
<tr><td>A^{+}</td><td>$A2^{+}$</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td></tr>
<tr><td>A^{0}</td><td>$A2^{0}$</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td></tr>
<tr><td>A^{-}</td><td>$A2^{-}$</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td></tr>
<tr><td rowspan="3">4.2</td><td>BBB^{+}</td><td>$A3^{+}$</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td></tr>
<tr><td>BBB^{0}</td><td>$A3^{0}$</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td></tr>
<tr><td>BBB^{-}</td><td>$A3^{-}$</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td></tr>
<tr><td rowspan="3">3.4</td><td>BB^{+}, BB^{0}</td><td>B^{+}</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td></tr>
<tr><td>BB^{-}</td><td>B^{0}</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td></tr>
<tr><td>B^{+}, B^{0}, B^{-}</td><td>B^{-}</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td></tr>
<tr><td>2.6</td><td>CCC^{+} 이하</td><td>C 이하</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td></tr>
</table>
</td><td></td><td></td></tr>
<tr><td>산출근거</td><td colspan="4"></td></tr>
</table>

⑵ 감리업무 수행실적	12	○ **평가 및 산정방법**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 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 [2010.9.1.부터 2012.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 준공실적(원) = 30억(원)×[{122일+(2년×365일)}÷(4년×365일)] = 1,750,684,931(원)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착공, 준공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 [2011.1.1.부터 2013.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5년×365일)] = 1,599,452,054(원) ◦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 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정함 - 배점기준 (단위 : 억원)				

공사규모	기준금액 및 배점				
1,500세대 이상	350이상	350미만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1,5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세대 미만 800세대 이상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8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300세대 미만	10이상	10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배 점	12	10.8	9.6	8.4	7.2

산출근거	억원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2		

<table>
<tr><td>⑶ 행정제재</td><td>9</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 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1점 이상 1.5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3점 미만 : 1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3점 이상 : 2점 감점
◦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td><td></td><td></td></tr>
<tr><td>산출근거</td><td colspan="3"></td></tr>
<tr><td>⑷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td><td>5</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table><tr><td>구 분</td><td>3년미만</td><td>3년 이상 6년 미만</td><td>6년 이상 10년 미만</td></tr><tr><td>특 허</td><td>100%</td><td>80%</td><td>60%</td></tr></table>-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td><td></td><td></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
- 배점기준
<table>
<tr><td>구분</td><td>3% 이상</td><td>3.0% 미만
2.5% 이상</td><td>2.5% 미만
2.0% 이상</td><td>2.0% 미만
1.5% 이상</td><td>1.5% 미만
1.0% 이상</td></tr>
<tr><td>점수</td><td>2.5</td><td>2.0</td><td>1.5</td><td>1.0</td><td>0.5</td></tr>
</table>
● 교육훈련(0.5점)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점
◦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점(생략)</td><td></td><td></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 colspan="3">- 건설기술개발실적 : 건 × 점</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3">-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td></tr>
<tr><td colspan="2"></td><td>- 교육훈련</td><td colspan="2">(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 =</td></tr>
<tr><td>(5) 신규감리원 배치</td><td>2</td><td colspan="3">○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 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 평가방법
(단위 : 세대)
<table>
<tr><td>구분</td><td>1,000세대 미만</td><td>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td><td>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td><td>2,000세대 이상</td></tr>
<tr><td>0명</td><td>2.0점</td><td>0점</td><td>0점</td><td>0점</td></tr>
<tr><td>1명</td><td>2.0점</td><td>1.5점</td><td>1.0점</td><td>0점</td></tr>
<tr><td>2명</td><td>2.0점</td><td>2.0점</td><td>1.5점</td><td>1.0점</td></tr>
<tr><td>3명</td><td>2.0점</td><td>2.0점</td><td>2.0점</td><td>1.5점</td></tr>
<tr><td>4명이상</td><td>2.0점</td><td>2.0점</td><td>2.0점</td><td>2.0점</td></tr>
</table></td><td></td><td></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 colspan="3">※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 4</td></tr>
</table>

<table>
<tr><td>⑹ 교체빈도</td><td>7</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배점기준
$$교체빈도율(\%) = \frac{최근\ 1년간\ 교체건수}{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times 100$$<table><tr><td>비율</td><td>5%미만</td><td>5%이상
10%미만</td><td>10%이상
15%미만</td><td>15%이상
20%미만</td><td>20%
이상</td></tr><tr><td>배점</td><td>7</td><td>5</td><td>3</td><td>1</td><td>0</td></tr></table>-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으로 각각 산정한다.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td><td></td><td></td></tr>
<tr><td>산출근거</td><td colspan="4">- 교체빈도 : (산출식 기재) = %</td></tr>
<tr><td rowspan="2">⑺ 가점</td><td>3</td><td>○ 평가 및 산정방법</td><td></td><td></td></tr>
<tr><td>(1) 감리원 추가 배치, 총괄감리원 등급 상향</td><td>-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다만, 같은 표 항목 (8) 적부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
- 평가방법<table><tr><td>구분</td><td>300세대 이상
1,000세대미만</td><td>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td><td>2,000세대
이상</td></tr><tr><td>1명</td><td>1.0점</td><td>0.7점</td><td>0.5점</td></tr><tr><td>2명</td><td>1.0점</td><td>1.0점</td><td>0.7점</td></tr><tr><td>3명 이상</td><td>1.0점</td><td>1.0점</td><td>1.0점</td></tr></table>※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td><td></td><td></td></tr>
<tr><td></td><td>산출근거</td><td></td><td></td><td></td></tr>
</table>

<table>
<tr><td></td><td>(1)
지역
가점</td><td>-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 배점기준
<table><tr><td>배점</td><td>주택건설지역</td></tr><tr><td>1</td><td>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td></tr></table></td><td></td><td></td></tr>
<tr><td></td><td>산출
근거</td><td colspan="3"></td></tr>
<tr><td></td><td>(1)
설계
용역
수행
가점</td><td>-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해당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1점</td><td></td><td></td></tr>
<tr><td></td><td>산출
근거</td><td colspan="3"></td></tr>
<tr><td>(8) 적격여부</td><td>[적·부]
감리원
배치
계획</td><td>○ 평가방법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감리비 지급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족되게 하여야 한다.
◦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상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td><td></td><td></td></tr>
<tr><td></td><td>산출
근거</td><td colspan="3"></td></tr>
</table>

	[적·부] 업무 중첩도	○ **평가방법**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 용역 등에 종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 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산출 근거			
	[적·부] 감리원 추가 의무 배치	○ **평가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 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영업정치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같은 호 바목 1)부터 4)까지, 같은 호 차목 6)부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2)까지, 16)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합산벌점 3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평가방법**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 중 제1호나목, 라목부터 자목까지, 제7호만 해당한다) 기간 동안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출 근거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추가인원	1명	2명	3명

나. 감리자(감리회사)

(1) 총괄감리원

<table>
<tr><th>항 목</th><th>배점</th><th>적 용 기 준</th><th colspan="2">평가점수</th></tr>
<tr><th></th><th></th><th></th><th>신청자</th><th>지정권자</th></tr>
<tr><td>소 계</td><td>27</td><td>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td><td></td><td></td></tr>
<tr><td>(가) 등급</td><td>6</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 1천세대 이상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 1천세대 미만은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td><td></td><td></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 colspan="3">등급 :</td></tr>
<tr><td>(나) 경력 및 실적</td><td>18</td><td>○ 평가 및 산정방법
<기본자격요건>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 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배점기준 적용>
- 건축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table>
<tr><td>배점</td><td>18
(15)</td><td>16.5
(13.5)</td><td>15
(12)</td><td>13.5
(10.5)</td></tr>
<tr><td>1천세대
이상</td><td>12년 이상</td><td>12년미만
10년이상</td><td>10년미만
8년 이상</td><td>8년 미만</td></tr>
<tr><td>1천세대
미만</td><td>10년 이상</td><td>10년미만
8년 이상</td><td>8년 미만
6년 이상</td><td>6년 미만</td></tr>
</table>
※ 면접(발표)은 실시하지 않음(면접 실시 배점 적용 없음)</td><td></td><td></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 colspan="3">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td></tr>
</table>

<table>
<tr><td>(다) 감리업무 수행계획서</td><td>3</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총괄감리원이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에 적정하게 작성 및 제출(서명·날인)한 경우 : 3점
◦ 감점 : 최대 0.5감점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문의 내용 불일치·오류·모순이 있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 작성기준 및 내용
(단위 : 세대)
<table>
<tr><td>구 분</td><td>500 미만</td><td>500 이상
1,500 미만</td><td>1,500 이상
2,500 미만</td><td>2,500 이상</td></tr>
<tr><td>쪽 수</td><td>15쪽 이상</td><td>20쪽 이상</td><td>25쪽 이상</td><td>30쪽 이상</td></tr>
<tr><td>부 문
(내 용)</td><td colspan="4">1. 사업 개요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td></tr>
</table>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식에 특별한 제한 없음</td><td></td><td></td></tr>
<tr><td>산출근거</td><td colspan="4"></td></tr>
<tr><td>(라) 자격가점</td><td>(0.2)</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2점
◦ 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td><td></td><td></td></tr>
<tr><td>산출근거</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마) 감점</td><td>(-3.0)</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td><td></td><td></td></tr>
<tr><td>(-2)
행정
제재</td><td>◦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 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
ㄹ. 합산벌점이 20점 이상 : 2.0점 감점</td><td></td><td></td></tr>
<tr><td>산출
근거</td><td colspan="3"></td></tr>
<tr><td>(-1)
교체
빈도</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td><td></td><td></td></tr>
<tr><td>산출
근거</td><td colspan="3"></td></tr>
</table>

< 비 고 >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업체수가 40개를 초과하는 경우

○ 업체수(A)가 홀수인 경우 : (A-1)/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되, '미' 부분에 1을 추가하여 등급 배분을 결정

○ 업체수(A)가 짝수인 경우 : A/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여 등급배분 결정

예) 업체수가 47개인 경우

- 업체수 23개[=(47-1)/2]에 해당하는 아래의 등급배분에,

23	2	5	9	5	2

- 2배를 곱하되, '미'부분에 1을 추가하여 '47개업체'일 경우의 등급 배분 결정

47	4	10	19	10	2

(2) 분야별감리원

- 주택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야별 감리원 각각 심사

주택건설공사 규모	평가대상 감리원수	분야별 감리원수	비 고
300세대 미만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등급·경력 및 실적은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소수점 들째자리 반올림)으로 평점하며, 가점·감점은 배점기준으로 평점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명	건축 1명, 토목 1명, 설비 1명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4명	건축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5명	건축 3명, 토목 1명, 설비 1명	
3,000세대 이상	6명	건축 4명, 토목 1명, 설비 1명	

※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건축)에 대한 점수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로 산정(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table>
<tr><th rowspan="2">항 목</th><th rowspan="2">배점</th><th rowspan="2">적 용 기 준</th><th colspan="2">평가점수</th></tr>
<tr><th>신청자</th><th>지정권자</th></tr>
<tr><td>소 계</td><td>9</td><td>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9점 이내</td><td></td><td></td></tr>
<tr><td>(가) 등급</td><td>2</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2점)
<table>
<tr><td>공사규모</td><td colspan="3">점 수</td></tr>
<tr><td rowspan="2">1천세대 이상</td><td>특급건설기술자</td><td>고급건설기술자</td><td>중급건설기술자</td></tr>
<tr><td>2</td><td>1.8</td><td>1.6</td></tr>
<tr><td rowspan="2">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td><td colspan="2">고급건설기술자 이상</td><td>중급건설기술자</td></tr>
<tr><td colspan="2">2</td><td>1.8</td></tr>
<tr><td rowspan="2">300세대 미만</td><td colspan="3">중급건설기술자 이상</td></tr>
<tr><td colspan="3">2</td></tr>
</table></td><td></td><td></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 건축 등급 :
- 토목 등급 :
- 설비 등급 :</td><td colspan="2"></td></tr>
<tr><td>(나) 경력 및 실적</td><td>7</td><td>○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
< 기본자격요건 >
-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이란 ①해당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건축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td><td></td><td></td></tr>
</table>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토목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설비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공무원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table>
<tr><td>공사규모</td><td colspan="4">점 수</td></tr>
<tr><td rowspan="2">1천세대 이상</td><td>10년 이상</td><td>10년 미만
8년 이상</td><td>8년 미만
6년 이상</td><td>6년 미만</td></tr>
<tr><td>7</td><td>6.3</td><td>5.6</td><td>4.9</td></tr>
<tr><td rowspan="2">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td><td colspan="2">6년 이상</td><td>6년 미만
2년 이상</td><td>2년 미만</td></tr>
<tr><td colspan="2">7</td><td>6.3</td><td>5.6</td></tr>
<tr><td rowspan="2">300세대 미만</td><td colspan="2">2년 이상</td><td colspan="2">2년 미만</td></tr>
<tr><td colspan="2">7</td><td colspan="2">6.3</td></tr>
</table>

산출근거	- 건축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토목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설비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다) 자격가점 (0.1)	○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1점 ◦ 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 중 직무분야가 기계, 토목,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산출근거	- 건축 : 자격사항 - 토목 : 자격사항 - 설비 : 자격사항

(라) 감점	(-1.5)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1) 행정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산출근거	건축 : 영업정지기간 등: (월), 합산벌점 : (점) 토목 : 영업정지기간 등: (월), 합산벌점 : (점) 설비 : 영업정지기간 등: (월), 합산벌점 : (점)		
	(-0.5) 교체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산출근거	건축 : 토목 : 설비 :		

(3) 비상주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6**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가) 등급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 ◦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2.0점 ◦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1.5점 ◦ 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산출근거		- 등급 :		
(나) 경력 및 실적	4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축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		

<table>
<tr><td></td><td></td><td>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배점기준
<table><tr><td>경 력</td><td>10년 이상</td><td>10년미만
5년이상</td><td>5년 미만</td></tr><tr><td>배 점</td><td>4점</td><td>2.5점</td><td>1점</td></tr></table>※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 점으로 평가하여야 함</td><td></td><td></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별첨3</td><td></td><td></td></tr>
<tr><td rowspan="4">(다) 감점</td><td>(-2)</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td><td></td><td></td></tr>
<tr><td>(-1)
행정
제재</td><td>-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td><td></td><td></td></tr>
<tr><td>산출
근거</td><td>- 영업정지기간 등 : (월)
- 합산벌점 : (점)</td><td></td><td></td></tr>
<tr><td>(-1)
교체
빈도</td><td>-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td><td></td><td></td></tr>
<tr><td>산출
근거</td><td></td><td></td><td></td></tr>
</table>

(4)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자	상 호		등록번호, 개설신고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5호서식]

확 인 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 용	위 치			대지면적	㎡
	사업 내용	공 사 명		사업승인일	
		규 모	층, 동, 세대	착공(예정)일	
		연 면 적	㎡	준공(예정)일	
		사업승인번호			

2. 감리자(감리회사)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개설신고번호	

주 소	

공동도급 비 율	(%)	※ 공동도급인 경우 용역참여 지분비율 기재
	(%)	

3. 확인신청 내용

가.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분 야	감리원 등급	비 고

나. 확인요청사항

확인요청 사항	확 인(√)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 지연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4. 확인내용

상기 공사가 ( )사유로 인하여 현재 (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현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 시·군·구)장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210㎜×297㎜[백상지(80g/㎡)]

[별첨 1]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여수시 공고 제 - 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 점 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각 협회에 통보하고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겠으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첨 2]

○ 감리자 감리업무수행 실적(<u>우선순위 3개업체</u>)

연번	용 역 명	감리기간		수주금액(억원)		적용요율(%)		환산금액(억원)
		착공일	준공(예정)일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환산비율	공사종류요율	
합 계								

※ 공사종류 요율은 주택건설공사 “100”% 그외는 “80”%로 기재

※ 환산비율 : 전체감리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수행한 기간에 대한 비율(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별첨 3]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우선순위 3개업체)

구분	경력사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일수	등급	평점
	사 업 명	기 간					
총괄감리원							
	소 계				일 년		
분야별감리원(3명) 및 비상주감리원(1명)							
	소 계				일 년		

[별첨 4]

○ 신규감리원의 배치(우선순위 3개업체)

가. 신규감리원의 자격사항

감리원 성 명	분 야	등 급 자 격			신규감리원 자격		평 점
		현재등급	자격명 (학력명)	취득일	해당시점 (감리사보)	해당시점 이후 경력 및 실적	

나. 신규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신규감리원 자격 해당시점 이후)

구 분	경 력 사 항		경 력 일 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비 고
	사 업 명	기 간				
신 규 감 리 원						
	소 계				일 년	

[별첨 5]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예시)

구분	분야	성명	등 급	투 입 기 간																												개월	환산비	인월수	비고
				년											년												년									
총괄	건축	○○○																																	
분야별	건축	○○○																																	
	토목	○○○																																	전반기
		○○○																																	후반기
	설비	○○○																																	
비상주	건축	○○○																																	
	○○	○○○																																	15%이내
신규	건축	○○○																																	
	○○	○○○																																	
	○○	○○○																																	
	○○	○○○																																	
비평가	건축	○○○																																	
	설비	○○○																																	
	토목	○○○																																	
	○○	○○○																																	
	○○	○○○																																	
추가배치	건축	○○○																																-	구조체 공사배치
	건축	○○○																																-	구조체 공사배치
총배치 인월수																																			

※ 감리대상공사비 :

- 법 정 인·월 수 : 인·월
- 투 입 인·월 수 : 인·월
- 비상주감리원 인 · 월수(배치율) : 인·월 (%)

※ 상기 서식에 맞추어 감리자(회사)가 작성한 배치계획표 양식으로 제출가능하며, 법정인 · 월수 산정근거 제시 바람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1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 송신 '(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 시행문 출력 '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3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4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5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참 고 사 항>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참고자료 2】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300세대 미만	40	60	**60-5×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45	**84.95%**
500세대 미만	50	50	**5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35	**82.95%**
1,000세대 미만	60	40	**40-2×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25	**80.45%**
1,000세대 이상	70	30	**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15	**72.95%**

【별지 제1호 서식】

총사업비 산출 현황표

(단위: 천원)

구 분			전 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총공사비	순공사비	토목공사	43,445,225	43,445,225		
		건축공사	182,938,382	182,938,382		
		기계설비공사	18,840,602	18,840,602		
		전기공사	14,151,959			14,151,959
		정보통신공사	8,000,803			8,000,803
		소방설비공사	14,065,929			14,065,929
		소계	281,442,900	245,224,209	-	36,218,691
	일반관리비		20,272,690	17,663,811		2,608,879
	이 윤		14,192,238	12,365,849		1,826,389
	계		315,907,828	275,253,869	-	40,653,959
간접비	설계비		5,333,869		5,333,869	
	감리비		7,398,592		7,398,592	
	일반분양시설경비		16,689,849		16,689,849	
	분담금 및 부담금		18,754,572		18,754,572	
	보상비		-		-	
	기타 사업비성 경비		59,613,777		59,613,777	
	계		107,790,659	-	107,790,659	-
대지비			156,632,987		156,632,987	
부가가치세액			6,452,261		6,452,261	
총사업비 계			586,783,735	275,253,869	270,875,907	40,653,959

【별지 제2호 서식】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단위: 천원)

구 분	분야	공종	전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순공사비	토목 (13개공종)	토공사	15,631,598	15,631,598		
		흙막이공사	13,759,102	13,759,102		
		비탈면보호공사	186,814	186,814		
		용벽공사	1,303,356	1,303,356		
		석축공사	-	-		
		우오수공사	312,805	312,805		
		공동구공사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1,316,390	1,316,390		
		도로포장공사	2,624,091	2,624,091		
		교통안전시설물공사	391,007	391,007		
		정화조시설공사	191,158	191,158		
		조경공사	4,778,974	4,778,974		
		부대시설공사	2,949,930	2,949,930		
		소계	43,445,225	43,445,225	-	-
	건축 (23개공종)	공통가설공사	2,725,781	2,725,781		
		가시설물공사	914,691	914,691		
		지정 및 기초공사	3,622,179	3,622,179		
		철골공사	-	-		
		철근콘크리트공사	102,079,629	102,079,629		
		용접공사	-	-		
		조적공사	1,774,502	1,774,502		
		미장공사	6,402,843	6,402,843		
		단열공사	5,030,805	5,030,805		
		방수방습공사	4,189,288	4,189,288		
		목공사	6,165,023	6,165,023		
		가구공사	11,140,947	11,140,947		
		금속공사	4,646,634	4,646,634		
		지붕 및 홈통공사	1,463,507	1,463,507		
		창호공사	9,988,435	9,988,435		
		유리공사	2,597,725	2,597,725		
		타일공사	3,658,767	3,658,767		
		돌공사	4,921,042	4,921,042		
		도장공사	1,719,620	1,719,620		
		도배공사	1,719,620	1,719,620		
		수장공사	5,506,445	5,506,445		
		주방용구공사	841,516	841,516		
		잡공사	1,829,383	1,829,383		
		소계	182,938,382	182,938,382	-	-
	기계설비 (9개공사)	급수설비공사	2,138,408	2,138,408		
		급탕설비공사	1,691,886	1,691,886		
		오배수 및 통기설비	2,914,641	2,914,641		
		위생기구공사	2,121,451	2,121,451		
		승강기기계공사	3,381,888	3,381,888		
		난방설비공사	1,446,958	1,446,958		
		가스설비공사	1,705,074	1,705,074		
		자동제어설비	276,956	276,956		
		특수설비공사	3,163,340	3,163,340		
		소계	18,840,602	18,840,602	-	-
	전기(15개공사)		14,151,959			14,151,959
	정보통신(13개공사)		8,000,803			8,000,803
	소방설비(2개공사)		14,065,929			14,065,929
일반관리비			20,272,690	17,663,811		2,608,879
이 윤			14,192,238	12,365,849		1,826,389
총 공 사 비			315,907,828	275,253,869	-	40,653,959

예 정 공 정 표(감리배치계획)

▣ 현　장　명 : 여수 소제지구 A-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착공예정일 : 2026년 03월 09일
▣ 공 사 기 간 : 2026년 03월 09일 ~ 2029년 05월 08일 (38개월)

년도	2026											2027												2028												2029						비고
월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전체공정																																										2026.03.09.~2029.05.08. (38개월)
건축공사																																										2026.03.09.~2029.05.08. (38개월)
구조체공사																																										2026.09.01.~2029.03.31. (19개월)
토목공사																																										2026.03.09.~2029.05.08. (38개월)
설비공사																																										2026.05.09.~2029.05.08. (36개월)

여수시 공고 제2025-3884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공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선정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 및 「소방시설 설계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 (소방청 고시 제2024-45호(2024. 9. 10.)」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소방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 .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2. 30. ~ 2025. 1. 6.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 여수 소제지구 A-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여수소제피에프브이(주) 대표자 박병엽,이탁기 (☎062)510-2114),
중흥토건(주) 대표자 이경호 (☎062)510-2237)

다. 시 공 자 : 중흥토건(주) 대표자 이경호 (☎062)510-2237),
우미건설(주) 대표자 배영한,조성준,김성철 (☎02)6914-1502),
아주건설(주) 대표자 김수홍,김용환 (☎061)381-6323),
남해종합개발(주) 대표자 김응서,유영걸 (☎062)220-2500)

라. 설 계 자 :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 대표자 김재석 (☎02)2047-3000),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유세한 (☎02)3438-8000),
(주)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이주경 (☎062)574-6467)

마.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여수소제지구 A3
○ 대지면적 : 52,617.0000㎡
○ 연 면 적 : 208,864.6781㎡
○ 규 모 : 공동주택(아파트) 14개동(지하5층, 지상25층) 및 부대 · 복리 · 근린생활시설
○ 세 대 수 : 공동주택(아파트) 1,095세대
○ 공사기간 : 2026. 03. 09. ~ 2029. 05. 08.(38개월)
※ 소방공사기간(예정) : 2026. 05. 09. ~ 2029. 05. 08.(36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5. 12. 12.

바. 사 업 비

○ 총사업비 : 586,783,735천원
○ 대 지 비 : 156,632,987천원
○ 총공사비 : 315,907,828원(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 부가가치세 미포함)
1) 감리 대상 공사비 : 15,788,414천원
2)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 : 300,119,414천원
※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는 건축, 전기, 정보통신 공사의 비용임.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는 별도 첨부자료 참조

사. 감리대가 : 1,996,383,739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1,936,492,227원(감리대가기준의 97%)
※ 소수점 이하(원단위 미만) 절사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1. 7.(수) 09:00 ~ 2026. 1. 9.(금) 12: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 지정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은 '감리대가' 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 1. 9.(금) 14:00부터,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됨.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우리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https://www.yeosu.go.kr/, 열린시정>여수소식>고시공고)에 결과가 게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절 받지 않음.

6.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1. 12.(월) 09:00 ~ 2026. 1. 14.(수)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 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날인 필)**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기간내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사실확인 서류 제출 후, 사실확인 서류를 PDF로 요청할 수 있음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 15.(목) 09:00 ~ 2026. 1. 19.(월)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

1)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2) 자기평가표(별지 제8호 서식) (세부평가내역은 열람불가)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감리자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상기 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절 받지 않음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따라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감리업을 등록한 자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 수행금액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으로 산정함.
- 유사용역의 범위는 공동주택에 한하며 수행실적의 단위는 억원으로 되어있어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로 작성함,
- 기성실적은 전체 감리비 중 기성실적으로 받은 금액의 누적금액을 이야기하며, 완공된 경우 기성실적은 100%를 적용함. 환산비율 및 공사종류 요율은 별표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비고를 참조 바랍니다.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감리업을 등록한 회사 소속인 자.

2) 상주감리인 · 월 산출은 소방시설공사업 및 시행령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지역가점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부여

9. 감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선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 첨부) ⇒ 전자입찰 및 개찰⇒ 우선순위(예비1~5순위) 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자 선정 방법

1) 「소방시설 설계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청 고시 제2024-45호 (2024. 9. 10.)」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소방시설 설계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4)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5)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실적분석" 자료에서 전체「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나. 평균 유동비율 : 125.42%

※ 구비서류 중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 {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을 기재하여야 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1)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및 서약서(별첨5)

2)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 - 신청서 제출시에는 세부평가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4) 감리비 입찰서[별지 제10호 서식] - 나라장터 입찰서로 갈음하오니 제출하지 않습니다.

5)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4]

6) 감리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 고시 제2024-45호, 2024. 9. 10.)」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용

2)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실안임**)

※ 기술개발실적 관련 소방기술에 관한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 업무중첩도

: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7)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업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8)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9)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감리원 보유증명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감리원 경력 증명서, 감리원 부실벌점 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증명서)

10)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11)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4 서식 참고하여 작성)

12) 그 밖에 1)~11)외에도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서식]와

뒷면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일체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다.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 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2) 각종 확인서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기준일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

3)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4)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 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5)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6) 가점으로 인해 100점을 초과하여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점수는 100점을 적용합니다.

7)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유사용역 수행 실적상 '해당 공사감리용역비'는 감리대가기준 금액임.

8) 유사용역 수행 실적 단위는 억원으로 되어 있어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로 작성하며, 기성실적은 전체 감리비 중 기성실적으로 받은 금액의 누적금액이며, 완공된 경우 기성실적은 100%를 적용함. 환산비율 및 공사종류 요율은 별첨3 소방공사(감리)용역 수행실적 하단 참조.

9) 참여분야 경력 산정시 일반감리의 수행기간내 다수(일반감리 등) 수행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하나의 경력기간으로 산정함.(산정시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10)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폐기함.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선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나. 응모서류 등록 접수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 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함.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하 또는 취소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에서 소방분야 실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특허 또는 실용신안 소방신기술: 소방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4) 교육: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1,2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바.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 분 / 과업수행계획			제출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	2.7	2.4	2.1	1.8	0
평가기준	내용	수행계획	적합		부적합			
		배치계획	적합		부적합			
	쪽 수 (표지 및 간지 제외)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			-

구 분 / 작업기법			제출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 수			2	1.8	1.6	1.4	1.2	0
평가기준	내용	문제점 / 조치사항 / 대책방안	적합		부적합			-
	쪽 수 (표지 및 간지 제외)		3쪽 내외	2쪽 미만	-			-

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아.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자.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 또는 재선정 절차로 감리업자 선정함.

차.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정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에 감리비를 정산해야 함.

카.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타.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우선순위(1~5순위) 업체의 서류는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즉시 폐기함.

파.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세부평가기준에 따름.**(평가표 등이 예전 자료일 경우 최신기준 적용)**

하. 감리대가 지급은 실착공일 기준으로 지급함.

거. 착공 전 시공사에서 요청하는 서류 및 시행사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바랍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 시 홈페이지(열린시정>여수소식>고시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 나라장터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061-659-4179)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1.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예정공정표 각 1부. 끝.

분 야	접수번호
소 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선정신청

(사업명 : 여수 소제지구 A-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5년 월 일

[회사명 기재]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업체명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치	대지면적 ㎡	착공일	
		사업내용 층, 동, 세대	연면적 ㎡	준공일	
	설계업자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감리업자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급(기계)	등급(전기)	감리원수첩번호
참여감리원	책 임					
	보 조					
	보 조					
	보 조					
	보 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소방시설 설계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신청안내	
첨부서류	1.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자기평가서 1부. 3. 별지 제10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1부. 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10㎜×297㎜[백상지(80g/㎡)]

사실확인 서류 (감리업자)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② 행정제재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③ 재무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⑤ 교체빈도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⑥ 작업계획 및 기법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⑦ 지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사실확인 서류 (감리원)	⑧ 소속근무처	감리원 보유증명서
	⑨ 등급 / 경력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 경력증명서
	⑩ 행정제재 / 교육실적	감리원 경력증명서
	⑪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⑫ 책임감리원 가점	감리원 경력증명서

유의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제24호의3 및 제40조제1항제13호의3	• 감리업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림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10㎜×297㎜[백상지(80g/㎡)]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8호서식]

자기평가서(상주 공사감리 대상)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신청인	선정권자	비고
참여감리원	50	책임감리원	등급	-			
			소방분야경력	12			
			참여분야경력	12			
				6			
		보조감리원	등급	-			
			소방분야경력	8			
			참여분야경력	8			
				4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신용도	10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감리업체	4			
			참여감리원	3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기술개발실적		4			
		기술개발투자실적		4			
		교육실적		2			
업무중첩도	10	책임감리원		7			
		보조감리원		3			
교체빈도	5	감리업체		2.5			
		참여감리원		2.5			
작업계획 및 기법	5	과업수행계획		3			
		작업기법		2			
가점	2	지역		1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합계							

신청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 · 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 ·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가. 참여 감리원</td><td>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td><td>50</td><td></td></tr>
<tr><td></td><td>가) 책임감리원
(1) 등급</td><td>[30]
(-)</td><td>○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td></tr>
<tr><td></td><td>(2) 소방분야 경력</td><td>(12)</td><td>○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table>
<tr><td>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td><td colspan="5">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td></tr>
<tr><td>100억원 이상</td><td>7 이상</td><td>7 미만
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td></tr>
<tr><td>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td><td>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td></tr>
<tr><td>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td><td>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
2 이상</td><td>2 미만</td></tr>
<tr><td>3억원 미만</td><td>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
2 이상</td><td>2 미만
1 이상</td><td>1 미만</td></tr>
<tr><td>점 수</td><td>12</td><td>11</td><td>10</td><td>9</td><td>8</td></tr>
</table></td></tr>
<tr><td></td><td>(3) 참여분야 경력</td><td>(12)</td><td>○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table>
<tr><td>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td><td>등 급</td><td colspan="5">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td></tr>
<tr><td rowspan="3">100억원 이상</td><td>특급(소방기술사)</td><td>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td></tr>
<tr><td>특급</td><td>7 이상</td><td>7 미만
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td></tr>
<tr><td>고급</td><td>8 이상</td><td>8 미만
7 이상</td><td>7 미만
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td></tr>
<tr><td rowspan="3">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td><td>특급(소방기술사)</td><td>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
2 이상</td><td>2 미만</td></tr>
<tr><td>특급</td><td>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td></tr>
<tr><td>고급</td><td>7 이상</td><td>7 미만
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td></tr>
<tr><td rowspan="3">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td><td>특급(소방기술사)</td><td>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
2 이상</td><td>2 미만
1 이상</td><td>1 미만</td></tr>
<tr><td>특급</td><td>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
2 이상</td><td>2 미만</td></tr>
<tr><td>고급</td><td>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td></tr>
<tr><td>3억원 미만</td><td>특급</td><td>4 이상</td><td>4 미만</td><td>3 미만</td><td>2 미만</td><td>1 미만</td></tr>
</table></td></tr>
</table>

			3 이상	2 이상	1 이상	
	고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12	11	10	9	8

(6) ○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특급(소방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소방기술사)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소방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	특급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고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6	5.7	5.4	5.1	4.8

산출근거 (별첨 1)	**- 소방분야경력 : 일 (년)** **-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 일 (년)** **- 참여분야경력(감리 및 공사감독등) : 일 (년)**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가. 참여 감리원</td><td>나) 보조감리원</td><td>[20]</td><td></td></tr>
<tr><td></td><td>(1) 등급</td><td>(-)</td><td>○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국가등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td></tr>
<tr><td></td><td>(2) 소방분야 경력</td><td>(8)</td><td>○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table>
<tr><td>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td><td colspan="5">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td></tr>
<tr><td>100억원 이상</td><td>7 이상</td><td>7 미만
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td></tr>
<tr><td>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td><td>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td></tr>
<tr><td>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td><td>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
2 이상</td><td>2 미만</td></tr>
<tr><td>3억원 미만</td><td>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
2 이상</td><td>2 미만
1 이상</td><td>1 미만</td></tr>
<tr><td>점 수</td><td>8</td><td>7.7</td><td>7.4</td><td>7.1</td><td>6.8</td></tr>
</table></td></tr>
<tr><td></td><td>(3) 참여분야 경력</td><td>(8)</td><td>○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table>
<tr><td>구 분</td><td>5년 이상</td><td>5년 미만
4년 이상</td><td>4년 미만
3년 이상</td><td>3년 미만</td></tr>
<tr><td>점 수</td><td>8.0</td><td>7.7</td><td>7.4</td><td>7.1</td></tr>
</table></td></tr>
<tr><td></td><td></td><td>(4)</td><td>○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table>
<tr><td>구 분</td><td>5년 이상</td><td>5년 미만
4년 이상</td><td>4년 미만
3년 이상</td><td>3년 미만</td></tr>
<tr><td>점 수</td><td>4.0</td><td>3.8</td><td>3.6</td><td>3.4</td></tr>
</table></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
(별첨 2)</td><td>보조</td><td>- 소방분야경력 : 일 (년)
-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 일 (년)
- 참여분야경력(감리 및 공사감독등) : 일 (년)</td></tr>
<tr><td>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td><td>실적금액</td><td>10
[10]</td><td>○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감리대가금액 기준) 대비 누계실적평가
<table>
<tr><td>구 분</td><td>점 수</td></tr>
<tr><td>100% 이상</td><td>10</td></tr>
<tr><td>80% 이상 100% 미만</td><td>9</td></tr>
<tr><td>60% 이상 80% 미만</td><td>8</td></tr>
<tr><td>40% 이상 60% 미만</td><td>7</td></tr>
<tr><td>40% 미만</td><td>6</td></tr>
</table></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
(별첨 3)</td><td colspan="2">누계실적금액 : 원</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다.신용도</td><td></td><td>10</td><td></td></tr>
<tr><td></td><td>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td><td>[7]</td><td></td></tr>
<tr><td></td><td>가) 감리업체</td><td>(4)</td><td>○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td></tr>
<tr><td></td><td>나) 참여감리원</td><td>(3)</td><td>○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td></tr>
<tr><td></td><td>2) 재정상태 건실도</td><td>[3]</td><td>○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td></tr>
<tr><td></td><td>가) 자본비율</td><td>(1)</td><td>-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예 시>
<table>
<tr><td>구 분</td><td>100% 이상</td><td>100% 미만 75% 이상</td><td>75% 미만 50% 이상</td><td>50% 미만 25% 이상</td><td>25% 미만</td></tr>
<tr><td>점 수</td><td>1.0</td><td>0.85</td><td>0.70</td><td>0.55</td><td>0.4</td></tr>
</table></td></tr>
<tr><td></td><td>나) 유동비율</td><td>(2)</td><td>○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예 시>
<table>
<tr><td>구 분</td><td>100% 이상</td><td>100% 미만 75% 이상</td><td>75% 미만 50% 이상</td><td>50% 미만 25% 이상</td><td>25% 미만</td></tr>
<tr><td>점 수</td><td>2.0</td><td>1.7</td><td>1.4</td><td>1.1</td><td>0.8</td></tr>
</table></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 colspan="2">입찰참가제한 감리업체 :
참여감리원 :
자본비율 :
유동비율 :</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td><td></td><td>10</td><td></td></tr>
<tr><td></td><td>1) 기술개발
실적</td><td>(4)</td><td>ㅇ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예 시>
<table><tr><th>구 분</th><th>5년 이하</th><th>5년 초과
10년 이하</th><th>10년 초과 20년
이하</th></tr><tr><td>특 허</td><td>100%</td><td>80%</td><td>60%</td></tr><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table>ㅇ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ㅇ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td></tr>
<tr><td></td><td>2) 기술개발
투자 실적</td><td>(4)</td><td>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예 시>
<table><tr><th>구 분</th><th>3% 이상</th><th>3.0% 미만
2.5% 이상</th><th>2.5% 미만
2.0% 이상</th><th>2.0% 미만
1.5% 이상</th><th>1.5% 미만</th></tr><tr><td>점 수</td><td>4</td><td>3.5</td><td>3.0</td><td>2.5</td><td>2.0</td></tr></table></td></tr>
<tr><td></td><td>3) 교육 실적</td><td>(2)</td><td>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td></tr>
<tr><td colspan="3">산출근거</td><td>기술개발실적: (산출식 기재)
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교육훈련 : (산출식 기재)</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마. 업무
중첩도</td><td></td><td>10
(10)</td><td>○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table><tr><td>구 분</td><td>책임감리원</td><td>보조감리원</td></tr><tr><td>점 수</td><td>7</td><td>3</td></tr></table>-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 (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 colspan="2">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td></tr>
<tr><td>바. 교체빈도</td><td>1) 감리업체</td><td>5
(2.5)</td><td>○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예 시>
<table><tr><td>교체빈도 (%)</td><td>10% 미만</td><td>10% 이상
20% 미만</td><td>20% 이상
30% 미만</td><td>30% 이상</td></tr><tr><td>점 수</td><td>2.5</td><td>2</td><td>1.5</td><td>0</td></tr></table></td></tr>
<tr><td></td><td>2) 참여감리원</td><td>(2.5)</td><td>○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 · 관리가 완료 된 날부터 적용한다.</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 colspan="2"></td></tr>
<tr><td>사. 작업계획
및 기법</td><td>1) 과업수행계획</td><td>5
(3)</td><td>○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 · 품질 · 안전 · 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 제출의 경우: <예 시>
<table><tr><td>구분</td><td>수</td><td>우</td><td>미</td><td>양</td><td>가</td><td>미제출</td></tr><tr><td>점수</td><td>3</td><td>2.7</td><td>2.4</td><td>2.1</td><td>1.8</td><td>0</td></tr></table></td></tr>
<tr><td></td><td>2) 작업기법</td><td>(2)</td><td>○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 · 제출의 경우: <예 시>
<table><tr><td>구분</td><td>수</td><td>우</td><td>미</td><td>양</td><td>가</td><td>미제출</td></tr><tr><td>점수</td><td>2</td><td>1.8</td><td>1.6</td><td>1.4</td><td>1.2</td><td>0</td></tr></table></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 colspan="2">절대평가 :</td></tr>
</table>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지역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책임감리원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산출근거		**지 역 :** **책임감리원 :** **부 실 벌 점 :**

[별첨 1]

감리원 경력확인서(총괄 : 성명)

1) 소방분야 경력

담당업무	시작일	종료일	근무처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2-1) 참여분야 경력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2-2) 참여분야 경력 :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같거나 유사한 용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당하는 실적)
- 업무분야가 전기/기계를 모두 수행한 경력만인정(전기 또는 기계분야 단독경력 불인정)

[별첨 2]

감리원 경력확인서(보조 : 성명)

1) 소방분야 경력

담당업무	시작일	종료일	근무처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2-1) 참여분야 경력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2-2) 참여분야 경력 :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같거나 유사한 용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당하는 실적)
- 업무분야가 전기/기계를 모두 수행한 경력만인정(전기 또는 기계분야 단독경력 불인정)

[별첨 3]

소방공사(감리)용역수행실적

연번	용 역 명	감리기간		수주금액(억원)		적용요율(%)		환산금액 (억원)
		시작일	종료 (예정)일	감리비	기성실적 (비율)	환산 비율	공사종류 요율	
합 계								

※ 준공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x 공동도급 참여비율 x 환산비율

※ 진행중인 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x 공동도급 참여비율 x 기성실적(비율) x 환산비율

※ 환산비율 : 전체감리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수행한 기간에 대한 비율(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 공사종류요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100% 이외 실적 70% 인정(단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용도가 공동주택일 경우 100% 인정, 관련서류 증빙)

※ 한국소방시설협회발행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에 등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별첨 4]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 용 역 명 :

○ 소방공사기간 : 20 . . ~20 . . (개월간)

| 구분 | 성명 | 등급 | 투입일자 | | |

[별첨 5]

감리자 선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여수시 공고 제 - 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의9 및「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당해 감리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 점 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 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각 협회에 통보하고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겠으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상업체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검토기준	결산서 구분	결산일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유 동 비 율 (최근년도)	%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매출액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 매 출 액	
총자본회전율	%	총 매 출 액		총 자 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부문) 합계금액		총매출액(소방부문) 합계금액	
		3차년 투자액		3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대상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가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 ] 공인회계사, [ ] 세무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서명 또는 인)
상호(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210㎜×297㎜[백상지 80g/㎡]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10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자	회사명		감리업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본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1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 송신 '(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 시행문 출력 '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3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4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5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참 고 사 항>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참고자료2】

[부표]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적격심사기준 적용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 찰 가 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 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추정가격 5억미만	30	70	**70 - 3×|(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55	82.95%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 찰 가 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 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추정가격 10억미만 5억이상	50	50	**50 - 3×|(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35	82.95%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 찰 가 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 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추정가격 10억이상	70	30	**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15	72.95%

○ㅣㅣ는 절대값 표시임.

【별지 제1호 서식】

총사업비 산출 현황표

(단위: 천원)

구 분			전 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총공사비	순공사비	토목공사	43,445,225			43,445,225
		건축공사	182,938,382			182,938,382
		기계설비공사	18,840,602			18,840,602
		전기공사	14,151,959			14,151,959
		정보통신공사	8,000,803			8,000,803
		소방설비공사	14,065,929	14,065,929		
		소계	281,442,900	14,065,929	-	267,376,971
	일반관리비		20,272,690	1,013,187		19,259,503
	이 윤		14,192,238	709,298		13,482,940
	계		315,907,828	15,788,414	-	300,119,414
간접비	설계비		5,333,869		5,333,869	
	감리비		7,398,592		7,398,592	
	일반분양시설경비		16,689,849		16,689,849	
	분담금 및 부담금		18,754,572		18,754,572	
	보상비		-		-	
	기타 사업비성 경비		59,613,777		59,613,777	
	계		107,790,659	-	107,790,659	-
대지비			156,632,987		156,632,987	
부가가치세액			6,452,261		6,452,261	
총사업비 계			586,783,735	15,788,414	270,875,907	300,119,414

【별지 제2호 서식】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단위: 천원)

구 분	분야	공종	전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순공사비	토목(13개공사)		43,445,225			43,445,225
	건축(23개공사)		182,938,382			182,938,382
	기계설비(9개공사)		18,840,602			18,840,602
	전기(15개공사)		14,151,959			14,151,959
	정보통신(13개공사)		8,000,803			8,000,803
	소방설비(2개공사)		14,065,929	14,065,929		
일반관리비			20,272,690	1,013,187		19,259,503
이 윤			14,192,238	709,298		13,482,940
총 공 사 비			315,907,828	15,788,414	-	300,119,414

예 정 공 정 표(감리배치계획)

▣ 현 장 명 : 여수 소제지구 A-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착공예정일 : 2026년 03월 09일
▣ 공 사 기 간 : 2026년 03월 09일 ~ 2029년 05월 08일 (38개월)
▣ 소 방 공 사 기 간 : 2026년 05월 09일~ 2029년 05월 08일 (3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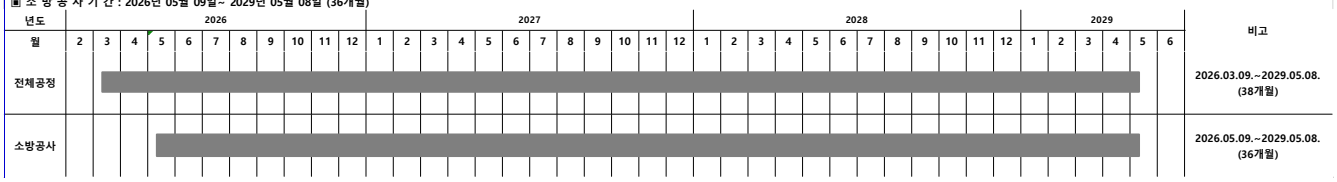

여수시 공고 제2025-3885호

2026년도 새기술 보급 실증시험포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26년도 새기술 보급 실증시험포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및 채용 등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여 수 시 장

1 최종 합격자 : 1명

○ 응시번호 : 3 김*미

2 신규채용 등록

가. 등록기한 : 2026. 1. 2.(금) 09:00까지

나. 등 록 처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목팀(3층)

다. 제출서류 : 채용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1부,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도장

3 등록 시 유의사항

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지정된 기일에 차질 없이 등록하여야 함.

나. 지정된 기일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목팀 (☏ 061-659-44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OOOO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기준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공고 제2025-3886호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 감리업자[전기] 모집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 3. 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 .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2. 30. ~ 2025. 1. 6.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 여수 소제지구 A-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여수소제피에프브이(주) 대표자 박병엽,이탁기 (☎062)510-2114),
중흥토건(주) 대표자 이경호 (☎062)510-2237)

다. 시 공 자 : 중흥토건(주) 대표자 이경호 (☎062)510-2237),
우미건설(주) 대표자 배영한,조성준,김성철 (☎02)6914-1502),
아주건설(주) 대표자 김수홍,김용환 (☎061)381-6323),
남해종합개발(주) 대표자 김응서,유영걸 (☎062)220-2500)

라. 설 계 자 :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 대표자 김재석 (☎02)2047-3000),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유세한 (☎02)3438-8000),
(주)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이주경 (☎062)574-6467)

마.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여수소제지구 A3
○ 대지면적 : 52,617.0000㎡
○ 연 면 적 : 208,864.6781㎡
○ 규 모 : 공동주택(아파트) 14개동(지하5층, 지상25층) 및 부대 · 복리 · 근린생활시설
○ 세 대 수 : 공동주택(아파트) 1,095세대
○ 공사기간 : 2026. 03. 09. ~ 2029. 05. 08.(38개월)
※ 전기공사기간(예정) : 2026. 05. 09. ~ 2029. 05. 08.(36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5. 12. 12.

바. 사 업 비

○ 총사업비: 586,783,735천원
○ 대 지 비: 156,632,987천원
○ 총공사비: 315,907,828천원(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 부가가치세 미포함)
1) 감리 대상 공사비 : 15,884,980천원
2)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 : 300,022,848천원
※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는 건축, 정보통신, 소방 공사의 비용임.
※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4호(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

사. 감리대가 : 1,177,721,088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1,142,389,455원(감리대가기준의 97%)
※ 소수점 이하(원단위 미만) 절사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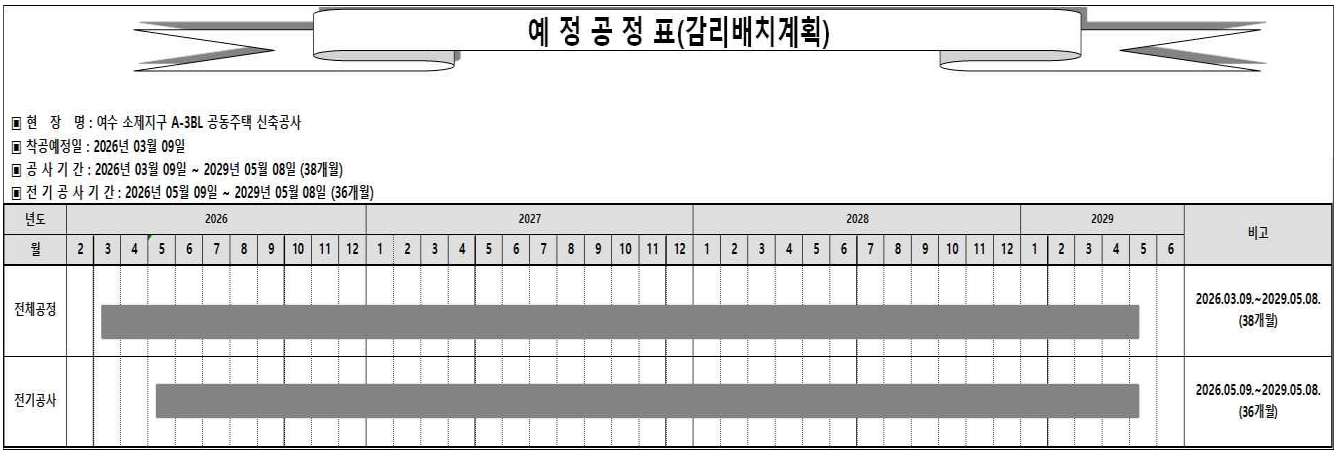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1. 7.(수) 09:00 ~ 2026. 1. 9.(금) 12: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 지정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은 '감리대가' 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 1. 9.(금) 14:00부터,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됨.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우리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https://www.yeosu.go.kr/, 열린시정>여수소식>고시공고)에 결과가 게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절 받지 않음.

6.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1. 12.(월) 09:00 ~ 2026. 1. 14.(수)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 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날인 필)**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기간내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사실확인 서류 제출 후, 사실확인 서류를 PDF로 요청할 수 있음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 15.(목) 09:00 ~ 2026. 1. 19.(월)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

1)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감리자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상기 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절 받지 않음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따라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 가능[영 별표5 제2호(감리업의 영업범위)]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의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2) 상주감리인 · 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 (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지역가점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산업통사자원부고시 제2023-36호(2023. 3. 2.)」 [부표 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별 세부평가방법에 의함.(단, 80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없음)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 첨부) ⇒ 전자입찰 및 개찰 ⇒ 우선순위(예비1~5

순위) 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자 지정 방법

1)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3.2)」및 동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0조의3에 따름.

4)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5)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실적분석" 자료에서 전체「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나. 평균 유동비율 : 125.42%

※ 구비서류 중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및 서약서[별첨4](임감날인)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서식](Ⅰ.총괄표, 비고란에 평점산정근거 기재)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서식]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4)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별첨3]

5)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별지 제6호의2 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3.2)」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2)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 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 업무중첩도

-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7)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8)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 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9)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경력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10)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다.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 업무수행실적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2) 각종 확인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함.

3)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가)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참여사업명 및 직무분야,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또는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함.

나)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하여는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에 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후 산정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복기간에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함.

4)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가)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 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함.

※ 합산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나) 전기 상주감리원(책임, 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 분야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다) 타 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라)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마) 입찰서류 제출 시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하고 허위 기재 시 탈락 처리함.

5)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6)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 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7)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8) [별첨 1]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2]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대하여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별첨 1, 2]양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나.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 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통보 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신청을 할 수 없음.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하 또는 취소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3)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4) 교육: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1,2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바.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분 / 과업수행계획			제출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수			3	2.7	2.4	2.1	1.8	0
평가기준	내용	수행계획	적합		부적합			
		배치계획	적합		부적합			
	쪽수 (표지및간지 제외)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			-

구분 / 작업기법			제출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수			2	1.8	1.6	1.4	1.2	0
평가기준	내용	문제점 / 조치사항 / 대책방안	적합		부적합			-
	쪽수 (표지및간지 제외)		3쪽 내외	2쪽 미만	-			-

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아.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자.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 또는 재선정 절차로 감리업자 선정함.

차.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정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에 감리비를 정산해야 함.

카.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타.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우선순위(1~5순위) 업체의 서류는 우리구 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즉시 폐기하오니 감리자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람.

파.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3.2.)]에 따르며, 공고문의 내용과 위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관련 법령 등을 따른다.

하. 착공 전 시공사에서 요청하는 서류 및 시행사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바랍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 시 홈페이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입찰정보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 나라장터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061-659-4179)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1.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예정공정표 각 1부. 끝.

분 야	접수번호
전 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선정신청

(사업명 : 여수 소제지구 A-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5년 월 일

[회사명 기재]

[별지 제6호의2서식]

(앞 쪽)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		
설계업자	대표자		상 호		
	주 소				

2. 감리업자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감리원수첩번호
책 임				
보 조				
보 조				
보 조				
비상주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구비서류 : 뒤쪽참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첨부서류

1. 자기평가서 1부.
2. 감리비 입찰서 1부.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감리업자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② 행정제재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③ 재무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 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⑤ 작업계획 및 기법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⑥ 교체빈도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⑦ 지 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감리원	① 등급/책임감리원가점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② 경 력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③ 행정제재	감리원경력확인서
	④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⑤ 교육실적	감리원경력확인서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나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

[별지 제7호 서식]

Ⅰ. 총괄표

자 기 평 가 서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배점	신청인	시·도	비고
1. 참여감리원	50	가. 책임 감리원	(1)등급	-			
			(2)경력 및 실적	25			
		나. 보조 감리원	(1)등급	-			
			(2)경력 및 실적	14			
		다. 비상주 감리원	(1)등급	2			
			(2)경력 및 실적	9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3. 신 용 도	10	가.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1)감리업체	4			
			(2)참여감리원	3			
		나. 재정상태건실도	(1)자본비율	1.0			
			(2)유동비율	2.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가. 개발실적		4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4			
		다. 교육실적		2			
5. 업무중첩도	10	가. 상주감리원		6			
		나. 비상주감리원		4			
6. 교체빈도	5	가. 감리업체		2.5			
		나. 참여감리원		2.5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가. 과업수행계획		3			
		나. 작업기법		2			
8. 가점·감점	1.5 1 -5	가. 지 역		1.5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다. 부실벌점		-5			
합 계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이 기준 및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0" 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거짓 등" 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평점은 당해업체가 기재하고, 평점산정근거를 비고란에 기재할 것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 평점란은 자기평점을 기재하고 평가란은 공란(기재하지 말 것)

1. 항목별 평가기준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
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h colspan="2">평가점수
신청자 | 선정권자</th></tr>
<tr><td colspan="2">소 계</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가. 참여감리원</td><td>50</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가. 참 여
감리원</td><td>(1) 책 임 감
리원
㈎등급

㈏경 력 및
실적</td><td>[25]

(-)

(25)</td><td>○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배점기준
<table>
<tr><td>규 모</td><td colspan="5">경력년수 및 점수</td></tr>
<tr><td>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td><td>6년이상</td><td>6년미만
5년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
3년이상</td><td>3년미만</td></tr>
<tr><td>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td>10년이상</td><td>10년미만
8년이상</td><td>8년미만6
년이상</td><td>6년미만4
년이상</td><td>4년미만</td></tr>
<tr><td>1,200세대이상</td><td>15년이상</td><td>15년미만
12년이상</td><td>12년미만
9년이상</td><td>9년미만6
년이상</td><td>6년미만</td></tr>
<tr><td>점 수</td><td>25</td><td>22</td><td>19</td><td>16</td><td>13</td></tr>
</table>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 표의 해당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table>
<tr><td>규 모</td><td>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td><td>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td>1,200세대이상</td></tr>
<tr><td>년 수</td><td>2년</td><td>3년</td><td>4년</td></tr>
</table></td><td></td><td></td></tr>
<tr><td>산출근거</td><td colspan="3">(1) 등 급 :
(2) 경력 및 실적 : 일(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td></tr>
<tr><td rowspan="2">(2) 보 조 감
리원
㈎등급

㈏경 력 및
실적</td><td>[14]

(-)

(14)</td><td>○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배점기준
<table>
<tr><td>규 모</td><td colspan="4">경력년수 및 점수</td></tr>
<tr><td rowspan="2">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td colspan="2">3년이상</td><td colspan="2">3년미만
2년이상</td><td>2년미만</td></tr>
<tr><td colspan="2">14</td><td colspan="2">12</td><td>10</td></tr>
<tr><td>1,200세대이
상</td><td>6년이상</td><td>6년미만
5년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td></tr>
<tr><td>점 수</td><td>14</td><td>12</td><td>10</td><td>8</td></tr>
</table>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td><td></td><td></td></tr>
<tr><td>산출근거</td><td colspan="3">(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td></tr>
</table>

<table>
<tr><td></td><td>(3) 비 상 주 감리원</td><td>[11]</td><td></td><td></td><td></td></tr>
<tr><td></td><td>(가)등급</td><td>(2)</td><td>○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 배점기준</td><td></td><td></td></tr>
<tr><td></td><td>(나)경력및 실적</td><td>(9)</td><td>
<table>
<tr><td>경 력</td><td>10년이상</td><td>10년미만
7년이상</td><td>7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td></tr>
<tr><td>점 수</td><td>9</td><td>7</td><td>5</td><td>3</td></tr>
</table>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산출근거</td><td>(1) 등 급 :</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2) 경력및실적 : 일(년) ※ 산출근거자료-별첨3</td><td></td><td></td></tr>
<tr><td colspan="2">나. 유사용역 수행실적</td><td>10</td><td></td><td></td><td></td></tr>
<tr><td>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td><td>감리 업체 실적</td><td>(10)</td><td>○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 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배점기준
<table>
<tr><td>규 모</td><td colspan="5">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td></tr>
<tr><td>1,200세대이상</td><td>80이상</td><td>80미만
64이상</td><td>64미만
48이상</td><td>48미만
32이상</td><td>32미만</td></tr>
<tr><td>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td><td>36이상</td><td>36미만
30이상</td><td>30미만
24이상</td><td>24미만
18이상</td><td>18미만</td></tr>
<tr><td>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td><td>12이상</td><td>12미만
9이상</td><td>9미만
6이상</td><td>6미만
4이상</td><td>4미만</td></tr>
<tr><td>점 수</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able></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산출근거</td><td>○ 연면적 : ㎡ ※ 산출근거자료-별첨4</td><td></td><td></td></tr>
<tr><td colspan="2">다. 신용도</td><td>10</td><td></td><td></td><td></td></tr>
<tr><td>다.신용도</td><td>(1)입찰참가 제 한 , 영 업정지</td><td>[7]</td><td></td><td></td><td></td></tr>
<tr><td></td><td>(가)감리 업체</td><td>(4)</td><td>○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td><td></td><td></td></tr>
<tr><td></td><td>(나)참여 감리원</td><td>(3)</td><td>○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산출근거</td><td>(1) 감리 업체 :</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2) 참여감리원 :</td><td></td><td></td></tr>
</table>

<table>
<tr><td></td><td>(2)재정상태 건실도</td><td>[3]</td><td></td><td></td><td></td></tr>
<tr><td></td><td>㈎ 자본 비율</td><td>(1.0)</td><td>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배점기준
<table><tr><td>구 분</td><td>100%이상</td><td>100%미만 75%이상</td><td>75%미만 50%이상</td><td>50%미만 25%이상</td><td>25%미만</td></tr><tr><td>점 수</td><td>1.0</td><td>0.85</td><td>0.70</td><td>0.55</td><td>0.4</td></tr></table></td><td></td><td></td></tr>
<tr><td></td><td>㈏ 유동 비율</td><td>(2.0)</td><td>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배점기준
<table><tr><td>구 분</td><td>100%이상</td><td>100%미만 75%이상</td><td>75%미만 50%이상</td><td>50%미만 25%이상</td><td>25%미만</td></tr><tr><td>점 수</td><td>2.0</td><td>1.7</td><td>1.4</td><td>1.1</td><td>0.8</td></tr></table></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산출근거</td><td>(1) 자본비율 : = %
(2) 유동비율 : = %</td><td></td><td></td></tr>
<tr><td colspan="2">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td><td>10</td><td></td><td></td><td></td></tr>
<tr><td>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td><td>(1) 개발 실적</td><td>(4)</td><td>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table><tr><td>구 분</td><td>5년이하</td><td>5년초과 10년이하</td><td>10년초과 20년이하</td></tr><tr><td>특 허</td><td>100%</td><td>80%</td><td>60%</td></tr><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tr><td>전력신기술</td><td>100%</td><td>80%</td><td>-</td></tr></table>※(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기술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td><td></td><td></td></tr>
<tr><td></td><td>(2) 기술개발 투자 실적</td><td>(4)</td><td>○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table><tr><td>구 분</td><td>3%이상</td><td>3.0%미만 2.5%이상</td><td>2.5%미만 2.0%이상</td><td>2.0%미만 1.5%이상</td><td>1.5%미만</td></tr><tr><td>점 수</td><td>4</td><td>3.5</td><td>3.0</td><td>2.5</td><td>2.0</td></tr></table></td><td></td><td></td></tr>
<tr><td></td><td>(3) 교육 실적</td><td>(2)</td><td>○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td><td></td><td></td></tr>
</table>

<table>
<tr><td></td><td>산출근거</td><td colspan="4">가. 개발실적 : = 건 × 배점</td></tr>
<tr><td></td><td></td><td colspan="4">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 %</td></tr>
<tr><td></td><td></td><td rowspan="2">다. 교육실적</td><td colspan="3">-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점</td></tr>
<tr><td></td><td></td><td colspan="3">- 1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점</td></tr>
<tr><td colspan="2">마. 업무중첩도</td><td>10</td><td colspan="4"></td></tr>
<tr><td>마. 업무중첩도</td><td>(1) 상주 감리원</td><td>(6)</td><td colspan="4">○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table><tr><td>구 분</td><td>책임감리원</td><td>보조감리원</td></tr><tr><td>점 수</td><td>4</td><td>2</td></tr></table>※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 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td></tr>
<tr><td></td><td>(2) 비상주 감리원</td><td>(4)</td><td colspan="4">○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table><tr><td>구 분</td><td>6개소미만</td><td>6개소</td><td>7개소</td><td>8개소</td><td>9개소이상</td></tr><tr><td>점 수</td><td>4</td><td>3</td><td>2</td><td>1</td><td>0</td></tr></table>※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td></tr>
<tr><td></td><td>산출근거</td><td colspan="5">가. 상주감리원 :</td></tr>
<tr><td></td><td></td><td colspan="5">나. 비상주감리원 : = 개소</td></tr>
<tr><td colspan="2">바. 교체빈도</td><td>5</td><td colspan="4"></td></tr>
<tr><td>바. 교체빈도</td><td>(1) 감리 업체</td><td>(2.5)</td><td colspan="4">○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table><tr><td>교체빈도 (%)</td><td>10%미만</td><td>10%이상 20%미만</td><td>20%이상 30%미만</td><td>30%이상</td></tr><tr><td>점 수</td><td>2.5</td><td>2</td><td>1.5</td><td>0</td></tr></table></td></tr>
<tr><td></td><td>(2) 참여 감리원</td><td>(2.5)</td><td colspan="4">○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td></tr>
<tr><td></td><td>산출근거</td><td colspan="5">가. 감리업체 : = %</td></tr>
<tr><td></td><td></td><td colspan="5">나. 참여감리원 : = 회 × 배점</td></tr>
</table>

<table>
<tr><td colspan="2">사. 작업계획 및 기법</td><td>5</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사. 작업계획 및 기법</td><td>(1) 과업 수행 계획</td><td>(3)</td><td colspan="3">ㅇ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table><tr><td>구 분</td><td>수</td><td>우</td><td>미</td><td>양</td><td>가</td><td>미제출</td></tr><tr><td>점 수</td><td>3</td><td>2.7</td><td>2.4</td><td>2.1</td><td>1.8</td><td>0</td></tr></table>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table><tr><td>구 분</td><td>수</td><td>우</td><td>미</td><td>양</td><td>가</td><td>미제출</td></tr><tr><td>점 수</td><td>2</td><td>1.8</td><td>1.6</td><td>1.4</td><td>1.2</td><td>0</td></tr></table></td></tr>
<tr><td>(2) 작업 기법</td><td>(2)</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 colspan="3">가. 과업수행계획 :
나. 작 업 기 법 :</td></tr>
</table>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평가점수	
				신청자	선정권자
소 계					
가점	(1) 지 역	(1.5)	○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2) 책 임 감리원	(1)	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산출근거		**(1) 지 역 :**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감점	**부실 벌점**	(-5)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산출근거		**ㅇ 부실벌점 :**		

[별지 제8호 서식]

감리비 입찰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자	회사명		감리업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설계(감리)업체

상 호		업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A÷B (%)	기술개발투자실적(전기부문)		총매출액(전기부문)	
		합계금액(A)		합계금액(B)	
		3차년	투자액	3차년	총매출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총매출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총매출액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별지 제10호 서식]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공사중지 확인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		

2. 감리업자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확인신청 내용

가.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비 고
책 임				
보 조				
비상주				

나. 확인사항

사 유	비 고	확인(√)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재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2개월 이상 공사중지	공사 중지일 : 년 월 일 재공사 예정일 : 년 월 일	

위 사업이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라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공사중지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위 감리원은 현재 ( )월간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공사중지 되었으므로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 1]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구분	경력사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일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책임감리원							
	[부표3-1]제1호 가+나+다목 **소계**				일 년		
	[부표3-1]제1호 라목(안전관리경력) **소계**				일 년		
	합 계				일 년		

구분	경력사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일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보조감리원							
	합 계				일 년		

구분	경력사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일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비상주감리원							
	[부표3-1]제1호 가+나+다목 **소계**				일 년		
	[부표3-1]제1호 라목(안전관리경력) **소계**				일 년		
	합 계				일 년		

[별첨 2]

○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 실적 (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연번	용 역 명	감리기간	연면적(㎡)		적용요율(%)		환 산 연면적 (㎡)	평 가
			주거시설	주거시설외	환산비율 (감리수행기간/ 전체감리기간)	이행비율 (도급비율)		
합 계								

※ 수행실적은 건별로 전체 작성

[별첨 3]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 용 역 명 :

○ 전기공사기간 : 20 . . ~20 . . (개월간)

구분	성명	등급	2018년						2019년												2020년						개월	비고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책임	○○○	특급																									21	예시
보조	○○○	-																										
	○○○	-																										
비상주	○○○	-																										

※ 참여감리원의 명단(성명)을 기입하여야 함.

[별첨 4]

감리자 선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여수시 공고 제 - 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 점 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 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각 협회에 통보하고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겠으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1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 송신 '(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 시행문 출력 '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3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4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5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참 고 사 항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참고자료2】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800세대 미만	30	70	**7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55	**82.95%**
1,200세대 미만	50	50	**5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35	**82.95%**
1,200세대 이상	70	30	**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15	**72.95%**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별지 제1호 서식】

총사업비 산출 현황표

(단위: 천원)

구 분			전 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총공사비	순공사비	토목공사	43,445,225			43,445,225
		건축공사	182,938,382			182,938,382
		기계설비공사	18,840,602			18,840,602
		전기공사	14,151,959	14,151,959		-
		정보통신공사	8,000,803			8,000,803
		소방설비공사	14,065,929			14,065,929
		소계	281,442,900	14,151,959	-	267,290,941
	일반관리비		20,272,690	1,019,384		19,253,306
	이 윤		14,192,238	713,637		13,478,601
	계		315,907,828	15,884,980	-	300,022,848
간접비	설계비		5,333,869		5,333,869	
	감리비		7,398,592		7,398,592	
	일반분양시설경비		16,689,849		16,689,849	
	분담금 및 부담금		18,754,572		18,754,572	
	보상비		-		-	
	기타 사업비성 경비		59,613,777		59,613,777	
	계		107,790,659	-	107,790,659	-
대지비			156,632,987		156,632,987	
부가가치세액			6,452,261		6,452,261	
총사업비 계			586,783,735	15,884,980	270,875,907	300,022,848

【별지 제2호 서식】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단위: 천원)

구 분	분야	공종	전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순공사비	토목(13개공사)		43,445,225			43,445,225
	건축(23개공사)		182,938,382			182,938,382
	기계설비(9개공사)		18,840,602			18,840,602
	전기 (15개공사)	옥외전력간선공사	1,976,458	1,976,458		
		옥외외등설치공사	313,752	313,752		
		CABLE TRAY공사	324,321	324,321		
		단위세대 전기공사	4,300,446	4,300,446		
		옥내전력간선공사	1,830,631	1,830,631		
		옥내공용부분전기공사	562,759	562,759		
		피뢰침 및 접지공사	285,301	285,301		
		지하주차장 전기공사	976,184	976,184		
		수변전공사	3,164,773	3,164,773		
		기계실 전력간선 및 동력공사	130,251	130,251		
		전기,기계실 전등전열공사	26,316	26,316		
		부대복리시설 전력간선공사	39,923	39,923		
		부대복리시설 전등전열공사	97,862	97,862		
		경비실 전등전열공사	1,948	1,948		
		근린생활 전기공사	121,034	121,034		
		소계	14,151,959	14,151,959	-	-
	정보통신(13개공사)		8,000,803			8,000,803
	소방설비(2개공사)		14,065,929			14,065,929
일반관리비			20,272,690	1,019,384		19,253,306
이 윤			14,192,238	713,637		13,478,601
총 공 사 비			315,907,828	15,884,980	-	300,022,848

예 정 공 정 표(감리배치계획)

▣ 현　장　명 : 여수 소제지구 A-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착공예정일 : 2026년 03월 09일
▣ 공 사 기 간 : 2026년 03월 09일 ~ 2029년 05월 08일 (38개월)
▣ 전 기 공 사 기 간 : 2026년 05월 09일 ~ 2029년 05월 08일 (3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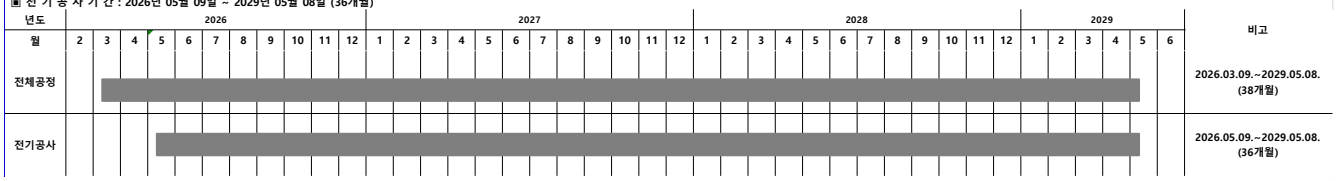

여수시 공고 제2025-3887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 〔이하 “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 .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2. 30. ~ 2025. 1. 6.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 여수 소제지구 A-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여수소제피에프브이(주) 대표자 박병엽,이탁기 (☎062)510-2114),
중흥토건(주) 대표자 이경호 (☎062)510-2237)

다. 시 공 자 : 중흥토건(주) 대표자 이경호 (☎062)510-2237),
우미건설(주) 대표자 배영한,조성준,김성철 (☎02)6914-1502),
아주건설(주) 대표자 김수홍,김용환 (☎061)381-6323),
남해종합개발(주) 대표자 김응서,유영걸 (☎062)220-2500)

라. 설 계 자 :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 대표자 김재석 (☎02)2047-3000),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유세한 (☎02)3438-8000),
(주)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이주경 (☎062)574-6467)

마.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여수소제지구 A4
○ 대지면적 : 26,585.0000㎡
○ 연 면 적 : 103,603.8763㎡
○ 규　　모 : 공동주택(아파트) 7개동(지하3층, 지상25층) 및 부대 · 복리 · 근린생활시설
○ 세 대 수 : 공동주택(아파트) 584세대
○ 공사기간 : 2026. 03.09. ~ 2029. 03. 08.(36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5. 12. 12.

바. 사 업 비

○ 총사업비 : 294,055,609천원
○ 대 지 비 : 79,349,382천원
○ 총공사비 : 156,700,868천원(일반관리비, 이윤, 발코니 확장 공사비 포함 / 부가가치세 미포함)
1) 건축감리 대상 공사비 : 133,577,970천원
2)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 : 23,122,898천원
※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공사의 비용임.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는 별도 첨부자료 참조

사. 감리대가 : 3,098,875,326원(건축공사비의 2.3199% 적용, 부가가치세 미포함)
※ 기초금액 : 3,005,909,066(감리대가기준의 97%)
※ 소수점 이하(원단위 미만) 절사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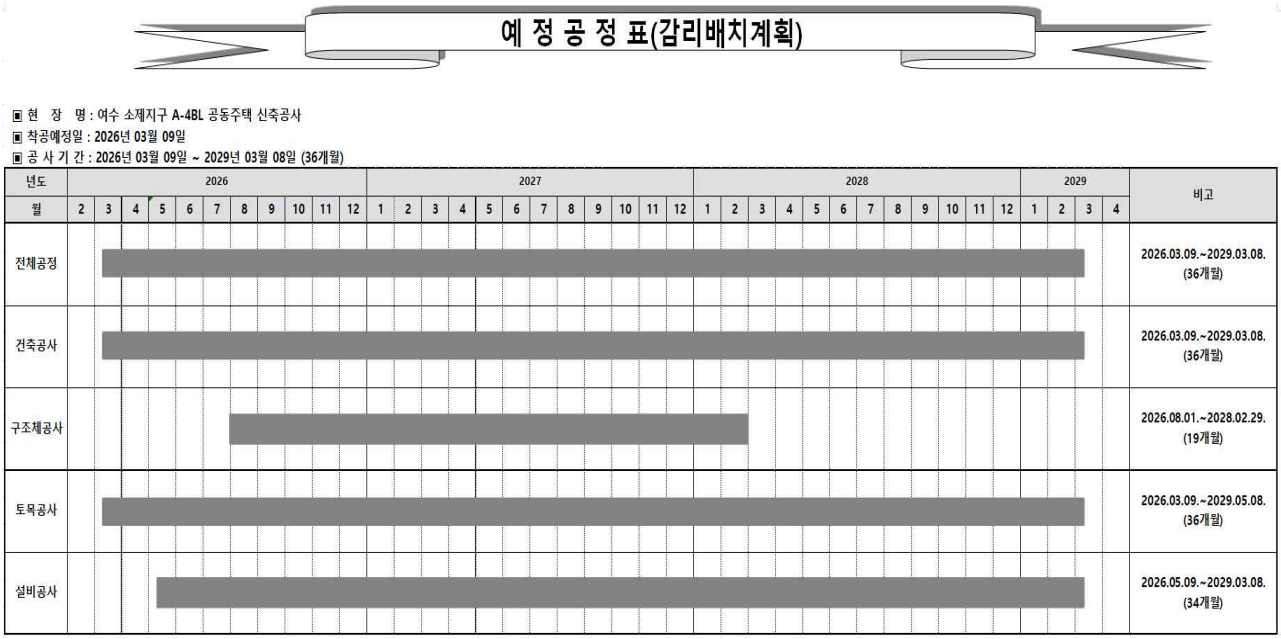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1. 7.(수) 09:00 ~ 2026. 1. 9.(금) 12: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방법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

라.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 지정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은 '감리대가' 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 1. 9.(금) 14:00부터,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한 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우리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https://www.yeosu.go.kr/, 열린시정>여수소식>고시공고)에 결과가 게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절 받지 않음.

6.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1. 12.(월) 09:00 ~ 2026. 1. 14.(수)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 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날인 필)**

※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기간내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사실확인 서류 제출 후, 사실확인 서류를 PDF로 요청할 수 있음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 15.(목) 09:00 ~ 2026. 1. 19.(월)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

1)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감리자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상기 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절 받지 않음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따라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다. 비상주감리원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2)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유 경력 및 실적점수를 "0" 점 처리함.

3) 비상주감리원의 인 · 월수는 총배치 인 · 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원은 다른 공사용역에 비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가 가능하나, 당해 공사를 포함하여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면 실격 처리됨.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바. 지역가점 : 해당없음

8-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① 사업주체 “여수소제피에프브이㈜” 외 1인의 행정처분 이력

- 사업계획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② 시공자 “중흥토건㈜” 외 3인의 행정처분 이력

- 사업계획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0.41점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건설업체 정보조회 결과

나.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 없음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첨부) ⇒ 개찰 ⇒ 우선순위(예비1~3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실시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나. 감리자 지정 방법

1)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제10조에 따릅니다.

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상기 2)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1회에 한해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6) 예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됩니다.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7)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 지정기준 제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10. 재무상태 평가

가. 평 가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등급으로 평가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평가대상 감리원은 명단 기입 /비평가 대상 감리원, 신규 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입)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 신청서 제출시에는 세부평가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5)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 [별지 제1호 서식]감리원 명단(비실명인 경우 직무분야 및 등급표기)과 배치계획이 상이한 경우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시 부적합 처리(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오니 비평가대상 및 가점을 위한 추가 배치감리원의 경우 반드시 직무분야 및 등급을 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1)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①~⑯까지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2024.10.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2)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분야별 세부평가[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첨2, 3, 4

3)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4)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유의사항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를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을 제외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유의사항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기간 동안 소속된 대표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의 행정제재 유무확인서 필요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해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처리 함.

6)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당해 주택건설 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 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 해당업체에 한함.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및 본 공고상의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8) 감리원배치계획

: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5) 및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9) 업무중첩도 관련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배치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10)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 및 감리원이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교체율 및 교체건수(계획공정 만료시점은 사업승인이 변경되어 계획공정이 변경된 경우라도 감리자 모집공고시 제출된 계획공정 만료시점을 말함)

11) 확인서 :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

1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총괄감리원 서명·날인)

: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13) 감리원 관련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14) 기타증빙자료

: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또는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사무소 등록증(감리전문회사만 등록된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자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15) 분야별 세부평가서 : 분야별 세부평가서 및 별첨 제출

다. 유의사항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3)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토목,기타설비), 비상주감리원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를 평가하므로 평가대상 감리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실격처리 함.

4)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 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 경력 · 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5)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6)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과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로 평가하고, [별첨 2],

[별첨 3], [별첨 4]는 평가의 원활을 위해 임의로 제출받는 것으로 감리자 지정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7)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감리업무수행실적, 행정제재여부,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회사)가 「감리자지정기준」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 · 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해당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 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4조제1항의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5)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통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우리 청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즉시 폐기처분합니다.

라.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 ·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있고,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감리 응모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다음 작성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배치 부적정으로 평가합니다.

1)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 공고 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법적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를 표시하고(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 및 배치율도 구분 표시), 참여감리원 전원(비평가대상감리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2) 비평가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 건축, 건축, 설비, 토목분야 순서로 해당 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며, 5번째부터는 구분 없이 배치 가능합니다.「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한 감리인 · 월수를 초과하여 배치하는 경우 비평가대상 감리원 전체 중 마지막 1명은 부분 배치 가능합니다.

(단, 신규감리원 및 비평가대상 비상주감리원은 배치순서에 관계없이 배치 가능함)

3)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 기간 동안(신규·비상주감리원은 건축1인 이상 배치) 배치하여야 하고,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합니다.

4)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급의 일일임금을 1로 기준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사.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감리자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와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지정기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 처리합니다.

아. 감리원 교육훈련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에 해당하는 교육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일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단,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며, 교육기간 만료시점이 공고 당일에 걸치는 경우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의 교육일수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자.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1)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와 근무형태, 직책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2)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함), 최근 3년 이내의 기간 산정은 당해 공사의 착공일·감리수행일(착공일과 감리수행일자가 상이한 경우 착공일 우선 적용)을 기준으로 하며, 수주한 금액은 공사진척률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3) 토목분야감리원의 경력 산정 시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 설계, 시공,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감독(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 소속 직원) 업무 및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경력으로 인

정합니다.

4) 공무원 등의 경력 인정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공동주택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100%를,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건설공사, 토목건설공사 또는 기타설비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80%를 감리원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차. 감리자소속 감리원 및 참여감리원(최근 1년간)중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 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배치계획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 교체 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카.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일 내 감리계약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계약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파.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 분야의 공종에 해당여부, 최초 출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와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공종 해당 여부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하. 응모서류는 감리원배치계획 및「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그 이외에는 제출한 자기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거. 감리자 응모서류 심사, 감리자지정, 감리운영 및 계약 등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거나 본 공고문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 기준 및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 해석에 따릅니다.

너. 비상주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포함)에 총괄감리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분야별감리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실격 처리 됩니다.

더.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 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러. 감리자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로 지정하고, 감리질서 문란행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부실벌점 등 행정제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 제14조에 따라 조치 할 수

있습니다.

머.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지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통보 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버. 당해 감리자지정권자의 필요에 따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해당 지자체 등 타 기관으로 최근 1년간 타 시·군의 감리자지정 및 감리원중복배치 여부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사실조회(최근 1년간 교체여부 포함)하오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감리원 배치기간의 감리업무 중첩도는 모집공고일 이전에 협회에 신고한 사항을 포함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감리원 배치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첩도에 포함합니다.

어. 본 용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총괄, 다. 감리자, (8)적격여부 중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 사항에 해당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르며, 공고내용, 평가표 등이 예전 기준, 자료이거나 현행과 맞지 않는 사항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 최신기준을 적용하며, 현행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 시 홈페이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입찰정보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 나라장터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061-659-4179)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1.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예정공정표 각 1부. 끝.

접수번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신청

(사업명 : 여수 소제지구 A-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5. . .

[건설기술용역업자(감리회사)명]

[별지 제1호서식]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		

설 계 자	성 명		상 호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개설신고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전화번호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신규(4)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유의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210㎜×297㎜[백상지(80g/㎡)]

사실확인 서류	감리자(회사)	①재무상태 건실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시 포함)
		⑦업무중첩도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⑪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감리원	⑫자격증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학력증명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⑭경력증명서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교육이수 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유의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상기 구비서류중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별지 제2호서식]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별지 제2호서식]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신청자	평점 지정권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감리자 (감리 회사)	재무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	5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12			예) 100(억원)
	행정제재			9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2			예) 특허 0건
		기술개발투자실적		2.5			예) 00(%)
		교육훈련		0.5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			2			예) 건축 0명
	교체빈도			7			예) 00(%)
	가점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1)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자
		지역가점		(1)			예) 00도(道),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		(1)			예) 현상 00(점)
	계			40			
	적격여부	감리원배치계획		적・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업무중첩도		적・부			예) 중복배치 없음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적・부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감리원	총괄감리원	등급		6			예) 특급건설기술자
		경력 및 실적		18 (15)			예) 00(년)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면접(발표)		(3)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3			
		가점	자격가점	(0.2)			예) 건축사, 00기술사
		감점	행정제재	(-2)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27			
	분야별감리원	등급	건축	2			예) 특급건설기술자
			토목	2			예) 고급건설기술자
			기타설비	2			예) 고급건설기술자
		경력 및 실적	건축	7			예) 00(년)
			토목	7			예) 00(년)
			기타설비	7			
		자격가점	건축	(0.1)			예) 건축사, 00기술사
			토목	(0.1)			
			기타설비	(0.1)			
		감점	행정제재 건축	(-1)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행정제재 토목	(-1)			
			행정제재 기타설비	(-1)			
			교체빈도 건축	(-0.5)			예) 00(건)
			교체빈도 토목	(-0.5)			
			교체빈도 기타설비	(-0.5)			
		소 계		27			
	비상주감리원	등급		2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경력 및 실적		4			예) 00(년)
		감점	행정제재	(-1)			예) 업무정지 00(월)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6			
	계			6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7210㎜×297㎜[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1]

분야별 세부평가(우선순위 상위 3개업체에 대하여만 제출)

※ 산출근거란에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자 평점란에만 기재합니다

가. 감리자(감리회사)

<table>
<tr><th rowspan="2">항 목</th><th rowspan="2">배점</th><th rowspan="2">적 용 기 준</th><th colspan="2">평가점수</th></tr>
<tr><th>신청자</th><th>지정권자</th></tr>
<tr><td>소 계</td><td>40</td><td>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td><td></td><td></td></tr>
<tr><td>(1) 재무상태 건 실 도</td><td>5</td><td>
○ 평가 및 산정방법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table>
<tr><th>점수</th><th>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th><th>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th><th>기업 신용평가등급</th></tr>
<tr><td rowspan="5">5.0</td><td>AAA</td><td>-</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td></tr>
<tr><td>AA^{+}, AA^{0}, AA^{-}</td><td>A1</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td></tr>
<tr><td>A^{+}</td><td>$A2^{+}$</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td></tr>
<tr><td>A^{0}</td><td>$A2^{0}$</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td></tr>
<tr><td>A^{-}</td><td>$A2^{-}$</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td></tr>
<tr><td rowspan="3">4.2</td><td>BBB^{+}</td><td>$A3^{+}$</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td></tr>
<tr><td>BBB^{0}</td><td>$A3^{0}$</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td></tr>
<tr><td>BBB^{-}</td><td>$A3^{-}$</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td></tr>
<tr><td rowspan="3">3.4</td><td>BB^{+}, BB^{0}</td><td>B^{+}</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td></tr>
<tr><td>BB^{-}</td><td>B^{0}</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td></tr>
<tr><td>B^{+}, B^{0}, B^{-}</td><td>B^{-}</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td></tr>
<tr><td>2.6</td><td>CCC^{+} 이하</td><td>C 이하</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td></tr>
</table>
</td><td></td><td></td></tr>
<tr><td>산출근거</td><td colspan="4"></td></tr>
</table>

⑵ 감리업무 수행실적	12	**○ 평가 및 산정방법**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 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 [2010.9.1.부터 2012.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 준공실적(원) = 30억(원)×[{122일+(2년×365일)}÷(4년×365일)] = 1,750,684,931(원)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착공, 준공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 [2011.1.1.부터 2013.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5년×365일)] = 1,599,452,054(원) ◦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 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정함 - 배점기준 (단위 : 억원)				

공사규모	기준금액 및 배점				
1,500세대 이상	350이상	350미만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1,5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세대 미만 800세대 이상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8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300세대 미만	10이상	10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배 점	12	10.8	9.6	8.4	7.2

산출근거	억원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2				

<table>
<tr><td>⑶ 행정제재</td><td>9</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 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1점 이상 1.5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3점 미만 : 1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3점 이상 : 2점 감점
◦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td><td></td><td></td></tr>
<tr><td>산출근거</td><td colspan="3"></td></tr>
<tr><td>⑷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td><td>5</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table><tr><td>구 분</td><td>3년미만</td><td>3년 이상 6년 미만</td><td>6년 이상 10년 미만</td></tr><tr><td>특 허</td><td>100%</td><td>80%</td><td>60%</td></tr></table>-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td><td></td><td></td></tr>
</table>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
- 배점기준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점수	2.5	2.0	1.5	1.0	0.5

● 교육훈련(0.5점)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점
  ◦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점(생략)

산출근거		
	- 건설기술개발실적 : 건 × 점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	
	- 교육훈련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 =

(5) 신규감리원 배치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 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 평가방법

(단위 : 세대)

구분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0명	2.0점	0점	0점	0점
1명	2.0점	1.5점	1.0점	0점
2명	2.0점	2.0점	1.5점	1.0점
3명	2.0점	2.0점	2.0점	1.5점
4명이상	2.0점	2.0점	2.0점	2.0점

산출근거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 4

<table>
<tr><td>⑹ 교체빈도</td><td>7</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배점기준
$$교체빈도율(\%) = \frac{최근\ 1년간\ 교체건수}{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times 100$$<table><tr><td>비율</td><td>5%미만</td><td>5%이상
10%미만</td><td>10%이상
15%미만</td><td>15%이상
20%미만</td><td>20%
이상</td></tr><tr><td>배점</td><td>7</td><td>5</td><td>3</td><td>1</td><td>0</td></tr></table>-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으로 각각 산정한다.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td><td></td><td></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 교체빈도 : (산출식 기재) = %</td><td></td><td></td></tr>
<tr><td rowspan="2">⑺ 가점</td><td>3</td><td>○ 평가 및 산정방법</td><td></td><td></td></tr>
<tr><td>(1) 감리원 추가 배치, 총괄감리원 등급 상향</td><td>-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다만, 같은 표 항목 (8) 적부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
- 평가방법<table><tr><td>구분</td><td>300세대 이상
1,000세대미만</td><td>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td><td>2,000세대
이상</td></tr><tr><td>1명</td><td>1.0점</td><td>0.7점</td><td>0.5점</td></tr><tr><td>2명</td><td>1.0점</td><td>1.0점</td><td>0.7점</td></tr><tr><td>3명 이상</td><td>1.0점</td><td>1.0점</td><td>1.0점</td></tr></table>※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td><td></td><td></td></tr>
<tr><td>산출근거</td><td></td><td></td><td></td></tr>
</table>

<table>
<tr><td></td><td>(1)
지역
가점</td><td>-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 배점기준
<table><tr><td>배점</td><td>주택건설지역</td></tr><tr><td>1</td><td>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td></tr></table></td><td></td><td></td></tr>
<tr><td></td><td>산출
근거</td><td colspan="3"></td></tr>
<tr><td></td><td>(1)
설계
용역
수행
가점</td><td>-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해당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1점</td><td></td><td></td></tr>
<tr><td></td><td>산출
근거</td><td colspan="3"></td></tr>
<tr><td>(8) 적격여부</td><td>[적·부]
감리원
배치
계획</td><td>○ 평가방법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감리비 지급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족되게 하여야 한다.
◦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상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td><td></td><td></td></tr>
<tr><td></td><td>산출
근거</td><td colspan="3"></td></tr>
</table>

	[적·부] 업무 중첩도	○ **평가방법**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 용역 등에 종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 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산출 근거			
	[적·부] 감리원 추가 의무 배치	○ **평가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 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영업정치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같은 호 바목 1)부터 4)까지, 같은 호 차목 6)부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2)까지, 16)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합산벌점 3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평가방법**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 중 제1호나목, 라목부터 자목까지, 제7호만 해당한다) 기간 동안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출 근거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추가인원	1명	2명	3명

나. 감리자(감리회사)

(1) 총괄감리원

<table>
<tr><th>항 목</th><th>배점</th><th>적 용 기 준</th><th colspan="2">평가점수</th></tr>
<tr><th></th><th></th><th></th><th>신청자</th><th>지정권자</th></tr>
<tr><td>소 계</td><td>27</td><td>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td><td></td><td></td></tr>
<tr><td>(가) 등급</td><td>6</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 1천세대 이상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 1천세대 미만은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td><td></td><td></td></tr>
<tr><td>산출근거</td><td colspan="3">등급 :</td><td></td></tr>
<tr><td>(나) 경력 및 실적</td><td>18</td><td>○ 평가 및 산정방법
<기본자격요건>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 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배점기준 적용>
- 건축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table>
<tr><td>배점</td><td>18
(15)</td><td>16.5
(13.5)</td><td>15
(12)</td><td>13.5
(10.5)</td></tr>
<tr><td>1천세대
이상</td><td>12년 이상</td><td>12년미만
10년이상</td><td>10년미만
8년 이상</td><td>8년 미만</td></tr>
<tr><td>1천세대
미만</td><td>10년 이상</td><td>10년미만
8년 이상</td><td>8년 미만
6년 이상</td><td>6년 미만</td></tr>
</table>
※ 면접(발표)은 실시하지 않음(면접 실시 배점 적용 없음)</td><td></td><td></td></tr>
<tr><td>산출근거</td><td colspan="3">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td><td></td></tr>
</table>

<table>
<tr><td>(다) 감리업무 수행계획서</td><td>3</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총괄감리원이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에 적정하게 작성 및 제출(서명·날인)한 경우 : 3점
◦ 감점 : 최대 0.5감점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문의 내용 불일치·오류·모순이 있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 작성기준 및 내용
(단위 : 세대)
<table>
<tr><td>구 분</td><td>500 미만</td><td>500 이상
1,500 미만</td><td>1,500 이상
2,500 미만</td><td>2,500 이상</td></tr>
<tr><td>쪽 수</td><td>15쪽 이상</td><td>20쪽 이상</td><td>25쪽 이상</td><td>30쪽 이상</td></tr>
<tr><td>부 문
(내 용)</td><td colspan="4">1. 사업 개요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td></tr>
</table>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식에 특별한 제한 없음</td><td></td><td></td></tr>
<tr><td>산출근거</td><td colspan="4"></td></tr>
<tr><td>(라) 자격가점</td><td>(0.2)</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2점
◦ 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td><td></td><td></td></tr>
<tr><td>산출근거</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5">(마) 감점</td><td>(-3.0)</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td><td></td><td></td></tr>
<tr><td>(-2)
행정
제재</td><td>◦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 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
ㄹ. 합산벌점이 20점 이상 : 2.0점 감점</td><td></td><td></td></tr>
<tr><td>산출
근거</td><td colspan="3"></td></tr>
<tr><td>(-1)
교체
빈도</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td><td></td><td></td></tr>
<tr><td>산출
근거</td><td colspan="3"></td></tr>
</table>

< 비 고 >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업체수가 40개를 초과하는 경우

○ 업체수(A)가 홀수인 경우 : (A-1)/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되, '미' 부분에 1을 추가하여 등급 배분을 결정

○ 업체수(A)가 짝수인 경우 : A/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여 등급배분 결정

예) 업체수가 47개인 경우

- 업체수 23개[=(47-1)/2]에 해당하는 아래의 등급배분에,

23	2	5	9	5	2

- 2배를 곱하되, '미'부분에 1을 추가하여 '47개업체'일 경우의 등급 배분 결정

47	4	10	19	10	2

(2) 분야별감리원

- 주택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야별 감리원 각각 심사

주택건설공사 규모	평가대상 감리원수	분야별 감리원수	비 고
300세대 미만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등급·경력 및 실적은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소수점 들째자리 반올림)으로 평점하며, 가점·감점은 배점기준으로 평점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명	건축 1명, 토목 1명, 설비 1명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4명	건축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5명	건축 3명, 토목 1명, 설비 1명	
3,000세대 이상	6명	건축 4명, 토목 1명, 설비 1명	

※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건축)에 대한 점수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로 산정(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table>
<tr><th>항 목</th><th>배점</th><th>적 용 기 준</th><th colspan="2">평가점수</th></tr>
<tr><th></th><th></th><th></th><th>신청자</th><th>지정권자</th></tr>
<tr><td>소 계</td><td>9</td><td>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9점 이내</td><td></td><td></td></tr>
<tr><td>(가) 등급</td><td>2</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2점)
<table>
<tr><td>공사규모</td><td colspan="3">점 수</td></tr>
<tr><td rowspan="2">1천세대 이상</td><td>특급건설기술자</td><td>고급건설기술자</td><td>중급건설기술자</td></tr>
<tr><td>2</td><td>1.8</td><td>1.6</td></tr>
<tr><td rowspan="2">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td><td colspan="2">고급건설기술자 이상</td><td>중급건설기술자</td></tr>
<tr><td colspan="2">2</td><td>1.8</td></tr>
<tr><td rowspan="2">300세대 미만</td><td colspan="3">중급건설기술자 이상</td></tr>
<tr><td colspan="3">2</td></tr>
</table></td><td></td><td></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 건축 등급 :
- 토목 등급 :
- 설비 등급 :</td><td colspan="2"></td></tr>
<tr><td>(나) 경력 및 실적</td><td>7</td><td>○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
< 기본자격요건 >
-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이란 ①해당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건축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td><td></td><td></td></tr>
</table>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토목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설비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공무원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table>
<tr><td>공사규모</td><td colspan="4">점 수</td></tr>
<tr><td rowspan="2">1천세대 이상</td><td>10년 이상</td><td>10년 미만
8년 이상</td><td>8년 미만
6년 이상</td><td>6년 미만</td></tr>
<tr><td>7</td><td>6.3</td><td>5.6</td><td>4.9</td></tr>
<tr><td rowspan="2">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td><td colspan="2">6년 이상</td><td>6년 미만
2년 이상</td><td>2년 미만</td></tr>
<tr><td colspan="2">7</td><td>6.3</td><td>5.6</td></tr>
<tr><td rowspan="2">300세대 미만</td><td colspan="2">2년 이상</td><td colspan="2">2년 미만</td></tr>
<tr><td colspan="2">7</td><td colspan="2">6.3</td></tr>
</table>

산출근거	- 건축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토목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설비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다) 자격가점	(0.1)	○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1점 ◦ 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 중 직무분야가 기계, 토목,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산출근거	- 건축 : 자격사항 - 토목 : 자격사항 - 설비 : 자격사항

(라) 감점	(-1.5)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1) 행정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산출근거	건축 : 영업정지기간 등: (월), 합산벌점 : (점) 토목 : 영업정지기간 등: (월), 합산벌점 : (점) 설비 : 영업정지기간 등: (월), 합산벌점 : (점)		
	(-0.5) 교체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산출근거	건축 : 토목 : 설비 :		

(3) 비상주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6**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가) 등급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 ◦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2.0점 ◦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1.5점 ◦ 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산출근거		- 등급 :		
(나) 경력 및 실적	4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축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		

<table>
<tr><td></td><td></td><td>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배점기준
<table><tr><td>경 력</td><td>10년 이상</td><td>10년미만
5년이상</td><td>5년 미만</td></tr><tr><td>배 점</td><td>4점</td><td>2.5점</td><td>1점</td></tr></table>※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 점으로 평가하여야 함</td><td></td><td></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 colspan="3">-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별첨3</td></tr>
<tr><td rowspan="5">(다) 감점</td><td>(-2)</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td><td></td><td></td></tr>
<tr><td>(-1)
행정
제재</td><td>-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td><td></td><td></td></tr>
<tr><td>산출
근거</td><td colspan="3">- 영업정지기간 등 : (월)
- 합산벌점 : (점)</td></tr>
<tr><td>(-1)
교체
빈도</td><td>-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td><td></td><td></td></tr>
<tr><td>산출
근거</td><td colspan="3"></td></tr>
</table>

(4)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자	상 호		등록번호, 개설신고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5호서식]

확 인 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 용	위 치			대지면적	㎡
	사업 내용	공 사 명		사업승인일	
		규 모	층, 동, 세대	착공(예정)일	
		연 면 적	㎡	준공(예정)일	
		사업승인번호			

2. 감리자(감리회사)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개설신고번호	
주 소					
공동도급 비 율	(%)	※ 공동도급인 경우 용역참여 지분비율 기재			
	(%)				

3. 확인신청 내용

가.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분 야	감리원 등급	비 고

나. 확인요청사항

확인요청 사항	확 인(√)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 지연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4. 확인내용

상기 공사가 ( )사유로 인하여 현재 (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현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 시·군·구)장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210㎜×297㎜[백상지(80g/㎡)]

[별첨 1]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여수시 공고 제 - 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 점 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각 협회에 통보하고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겠으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첨 2]

○ 감리자 감리업무수행 실적(<u>우선순위 3개업체</u>)

연번	용 역 명	감리기간		수주금액(억원)		적용요율(%)		환산금액(억원)
		착공일	준공(예정)일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환산비율	공사종류요율	
합 계								

※ 공사종류 요율은 주택건설공사 “100”% 그외는 “80”%로 기재

※ 환산비율 : 전체감리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수행한 기간에 대한 비율(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별첨 3]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u>우선순위 3개업체</u>)

구분	경력사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일수	등급	평점
	사 업 명	기 간					
총괄감리원							
	소 계				일 년		
분야별감리원(3명) 및 비상주감리원(1명)							
	소 계				일 년		

[별첨 4]

○ 신규감리원의 배치(우선순위 3개업체)

가. 신규감리원의 자격사항

감리원 성 명	분 야	등 급 자 격			신규감리원 자격		평 점
		현재등급	자격명 (학력명)	취득일	해당시점 (감리사보)	해당시점 이후 경력 및 실적	

나. 신규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신규감리원 자격 해당시점 이후)

구 분	경 력 사 항		경 력 일 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비 고
	사 업 명	기 간				
신 규 감 리 원						
	소 계				일 년	

[별첨 5]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예시)

구분	분야	성명	등 급	투 입 기 간																													개월	환산비	인월수	비고
				년											년												년									
총괄	건축	○○○																																		
분야별	건축	○○○																																		
	토목	○○○																																		전반기
		○○○																																		후반기
	설비	○○○																																		
비상주	건축	○○○																																		15%이내
	○○	○○○																																		
신규	건축	○○○																																		
	○○	○○○																																		
	○○	○○○																																		
	○○	○○○																																		
비평가	건축	○○○																																		
	설비	○○○																																		
	토목	○○○																																		
	○○	○○○																																		
	○○	○○○																																		
추가배치	건축	○○○																																	-	구조체 공사배치
	건축	○○○																																	-	구조체 공사배치
총배치 인월수																																				

※ 감리대상공사비 :

- 법 정 인·월 수 : 인·월
- 투 입 인·월 수 : 인·월
- 비상주감리원 인 · 월수(배치율) : 인·월 (%)

※ 상기 서식에 맞추어 감리자(회사)가 작성한 배치계획표 양식으로 제출가능하며, 법정인 · 월수 산정근거 제시 바람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1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 송신 '(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 시행문 출력 '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3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4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5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참 고 사 항>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참고자료 2】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300세대 미만	40	60	**60-5×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45	**84.95%**
500세대 미만	50	50	**5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35	**82.95%**
1,000세대 미만	60	40	**40-2×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25	**80.45%**
1,000세대 이상	70	30	**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15	**72.95%**

【별지 제1호 서식】

총사업비 산출 현황표

(단위: 천원)

구 분			전 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총공사비	순공사비	토목공사	12,168,508	12,168,508		
		건축공사	91,274,174	91,274,174		
		기계설비공사	10,695,220	10,695,220		
		전기공사	8,770,823			8,770,823
		정보통신공사	2,764,847			2,764,847
		소방설비공사	5,418,431			5,418,431
		소계	131,092,003	114,137,902	-	16,954,101
	일반관리비		13,528,866	10,269,962		3,258,904
	이 윤		12,079,999	9,170,106		2,909,893
	계		156,700,868	133,577,970	-	23,122,898
간접비	설계비		2,778,928		2,778,928	
	감리비		4,150,000		4,150,000	
	일반분양시설경비		8,363,803		8,363,803	
	분담금 및 부담금		9,398,500		9,398,500	
	보상비		-		-	
	기타 사업비성 경비		33,254,269		33,254,269	
	계		57,945,500	-	57,945,500	-
대지비			79,349,382		79,349,382	
부가가치세액			59,859		59,859	
총사업비 계			294,055,609	133,577,970	137,354,741	23,122,898

【별지 제2호 서식】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단위: 천원)

구 분	분야	공종	전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순공사비	토목 (13개공종)	토공사	4,493,894	4,493,894		
		흙막이공사	1,309,350	1,309,350		
		비탈면보호공사	52,325	52,325		
		용벽공사	634,904	634,904		
		석축공사	-	-		
		우오수공사	1,005,264	1,005,264		
		공동구공사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365,060	365,060		
		도로포장공사	640,072	640,072		
		교통안전시설물공사	85,180	85,180		
		정화조시설공사	36,506	36,506		
		조경공사	3,180,893	3,180,893		
		부대시설공사	365,060	365,060		
		소계	12,168,508	12,168,508	-	-
	건축 (23개공종)	공통가설공사	5,266,611	5,266,611		
		가시설물공사	1,968,510	1,968,510		
		지정 및 기초공사	3,589,262	3,589,262		
		철골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46,258,967	46,258,967		
		용접공사	-			
		조적공사	895,911	895,911		
		미장공사	3,169,754	3,169,754		
		단열공사	-			
		방수방습공사	1,609,119	1,609,119		
		목공사	5,760,041	5,760,041		
		가구공사	1,078,778	1,078,778		
		금속공사	858,274	858,274		
		지붕 및 홈통공사	-	-		
		창호공사	4,077,509	4,077,509		
		유리공사	1,496,676	1,496,676		
		타일공사	2,658,803	2,658,803		
		돌공사	348,978	348,978		
		도장공사	1,559,452	1,559,452		
		도배공사	826,576	826,576		
		수장공사	1,469,469	1,469,469		
		주방용구공사	719,185	719,185		
		잡공사	7,662,299	7,662,299		
		소계	91,274,174	91,274,174	-	-
	기계설비 (9개공사)	급수설비공사	2,401,097	2,401,097		
		급탕설비공사	2,100,960	2,100,960		
		오배수 및 통기설비	2,290,120	2,290,120		
		위생기구공사	904,468	904,468		
		승강기기계공사	1,774,074	1,774,074		
		난방설비공사	498,470	498,470		
		가스설비공사	473,867	473,867		
		자동제어설비	155,983	155,983		
		특수설비공사	96,181	96,181		
		소계	10,695,220	10,695,220	-	-
	전기(15개공사)		8,770,823			8,770,823
	정보통신(13개공사)		2,764,847			2,764,847
	소방설비(2개공사)		5,418,431			5,418,431
일반관리비			13,528,866	10,269,962		3,258,904
이 윤			12,079,999	9,170,106		2,909,893
총 공 사 비			156,700,868	133,577,970	-	23,122,898

예 정 공 정 표(감리배치계획)

▣ 현　장　명 : 여수 소제지구 A-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착공예정일 : 2026년 03월 09일
▣ 공 사 기 간 : 2026년 03월 09일 ~ 2029년 03월 08일 (3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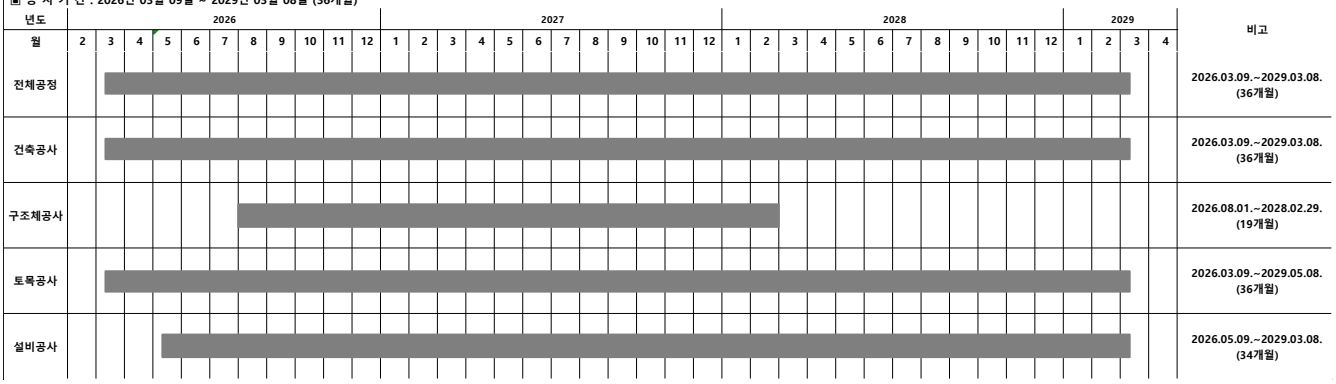

여수시 공고 제2025-3888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공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선정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 (소방청 고시 제2024-45호(2024. 9. 10.)」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소방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 .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2. 30. ~ 2025. 1. 6.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 여수 소제지구 A-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여수소제피에프브이(주) 대표자 박병엽,이탁기 (☎062)510-2114),
중흥토건(주) 대표자 이경호 (☎062)510-2237)

다. 시 공 자 : 중흥토건(주) 대표자 이경호 (☎062)510-2237),
우미건설(주) 대표자 배영한,조성준,김성철 (☎02)6914-1502),
아주건설(주) 대표자 김수홍,김용환 (☎061)381-6323),
남해종합개발(주) 대표자 김응서,유영걸 (☎062)220-2500)

라. 설 계 자 :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 대표자 김재석 (☎02)2047-3000),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유세한 (☎02)3438-8000),
(주)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이주경 (☎062)574-6467)

마.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여수소제지구 A4
○ 대지면적 : 26,585.0000㎡
○ 연 면 적 : 103,603.8763㎡
○ 규 모 : 공동주택(아파트) 7개동(지하3층, 지상25층) 및 부대·복리·근린생활시설
○ 세 대 수 : 공동주택(아파트) 584세대
○ 공사기간 : 2026. 03.09. ~ 2029. 03. 08.(36개월)
※ 소방공사기간(예정) : 2026. 05. 09.~2029. 03. 08.(34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5. 12. 12.

바. 사 업 비

○ 총사업비 : 294,055,609천원
○ 대 지 비 : 79,349,382천원
○ 총공사비 : 156,700,868원(일반관리비, 이윤, 발코니 확장 공사비 포함 / 부가가치세 미포함)
1) 감리 대상 공사비 : 7,814,152천원
2)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 : 148,886,716천원
※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는 건축, 전기, 정보통신 공사의 비용임.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는 별도 첨부자료 참조

사. 감리대가 : 1,223,593,857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1,186,886,041원(감리대가기준의 97%)
※ 소수점 이하(원단위 미만) 절사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1. 7.(수) 09:00 ~ 2026. 1. 9.(금) 12: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 지정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은 '감리대가' 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 1. 9.(금) 14:00부터,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됨.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우리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https://www.yeosu.go.kr/, 열린시정>여수소식>고시공고)에 결과가 게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절 받지 않음.

6.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1. 12.(월) 09:00 ~ 2026. 1. 14.(수)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 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날인 필)**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기간내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사실확인 서류 제출 후, 사실확인 서류를 PDF로 요청할 수 있음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 15.(목) 09:00 ~ 2026. 1. 19.(월)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

1)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2) 자기평가표(별지 제8호 서식) (세부평가내역은 열람불가)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감리자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상기 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절 받지 않음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따라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감리업을 등록한 자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 수행금액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으로 산정함.
- 유사용역의 범위는 공동주택에 한하며 수행실적의 단위는 억원으로 되어있어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로 작성함,
- 기성실적은 전체 감리비 중 기성실적으로 받은 금액의 누적금액을 이야기하며, 완공된 경우 기성실적은 100%를 적용함. 환산비율 및 공사종류 요율은 별표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비고를 참조 바랍니다.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감리업을 등록한 회사 소속인 자.

2) 상주감리인 · 월 산출은 소방시설공사업 및 시행령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지역가점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부여

9. 감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선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 첨부) ⇒ 전자입찰 및 개찰⇒ 우선순위(예비1~5순위) 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자 선정 방법

1) 「소방시설 설계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청 고시 제2024-45호 (2024. 9. 10.)」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소방시설 설계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4)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5)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실적분석" 자료에서 전체「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나. 평균 유동비율 : 125.42%

※ 구비서류 중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 {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을 기재하여야 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1)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및 서약서(별첨5)

2)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 - 신청서 제출시에는 세부평가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4) 감리비 입찰서[별지 제10호 서식] - 나라장터 입찰서로 갈음하오니 제출하지 않습니다.

5)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4]

6) 감리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 고시 제2024-45호, 2024. 9. 10.)」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용

2)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실안임**)

※ 기술개발실적 관련 소방기술에 관한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 업무중첩도

: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7)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업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8)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9)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감리원 보유증명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감리원 경력 증명서, 감리원 부실벌점 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증명서)

10)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11)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4 서식 참고하여 작성)

12) 그 밖에 1)~11)외에도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서식]와

뒷면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일체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다.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 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2) 각종 확인서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기준일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

3)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4)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 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5)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6) 가점으로 인해 100점을 초과하여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점수는 100점을 적용합니다.

7)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유사용역 수행 실적상 '해당 공사감리용역비'는 감리대가기준 금액임.

8) 유사용역 수행 실적 단위는 억원으로 되어 있어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로 작성하며, 기성실적은 전체 감리비 중 기성실적으로 받은 금액의 누적금액이며, 완공된 경우 기성실적은 100%를 적용함. 환산비율 및 공사종류 요율은 별첨3 소방공사(감리)용역 수행실적 하단 참조.

9) 참여분야 경력 산정시 일반감리의 수행기간내 다수(일반감리 등) 수행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하나의 경력기간으로 산정함.(산정시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10)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폐기함.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선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나. 응모서류 등록 접수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 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함.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하 또는 취소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에서 소방분야 실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특허 또는 실용신안 소방신기술: 소방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4) 교육: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1,2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바.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 분 / 과업수행계획			제출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	2.7	2.4	2.1	1.8	0
평가기준	내용	수행계획	적합		부적합			
		배치계획	적합		부적합			
	쪽 수 (표지 및 간지 제외)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			-

구 분 / 작업기법			제출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 수			2	1.8	1.6	1.4	1.2	0
평가기준	내용	문제점	적합		부적합			-
		조치사항						
		대책방안						
	쪽 수 (표지 및 간지 제외)		3쪽 내외	2쪽 미만	-			-

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아.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자.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 또는 재선정 절차로 감리업자 선정함.

차.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정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에 감리비를 정산해야 함.

카.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타.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우선순위(1~5순위) 업체의 서류는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즉시 폐기함.

파.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세부평가기준에 따름.**(평가표 등이 예전 자료일 경우 최신기준 적용)**

하. 감리대가 지급은 실착공일 기준으로 지급함.

거. 착공 전 시공사에서 요청하는 서류 및 시행사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바랍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 시 홈페이지(열린시정>여수소식>고시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 나라장터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061-659-4179)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1.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예정공정표 각 1부. 끝.

분 야	접수번호
소 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선정신청

(사업명 : 여수 소제지구 A-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5년 월 일

[회사명 기재]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업체명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치	대지면적 ㎡	착공일	
		사업내용 층, 동, 세대	연면적 ㎡	준공일	
	설계업자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감리업자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급(기계)	등급(전기)	감리원수첩번호
	책 임					
	보 조					
	보 조					
	보 조					
	보 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소방시설 설계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신청안내	
첨부서류	1.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자기평가서 1부. 3. 별지 제10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1부. 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10㎜×297㎜[백상지(80g/㎡)]

사실확인 서류 (감리업자)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② 행정제재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③ 재무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⑤ 교체빈도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⑥ 작업계획 및 기법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⑦ 지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사실확인 서류 (감리원)	⑧ 소속근무처	감리원 보유증명서
	⑨ 등급 / 경력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 경력증명서
	⑩ 행정제재 / 교육실적	감리원 경력증명서
	⑪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⑫ 책임감리원 가점	감리원 경력증명서

유의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제24호의3 및 제40조제1항제13호의3	• 감리업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림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10㎜×297㎜[백상지(80g/㎡)]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8호서식]

자기평가서(상주 공사감리 대상)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신청인	선정권자	비고
참여감리원	50	책임감리원	등급	-			
			소방분야경력	12			
			참여분야경력	12			
				6			
		보조감리원	등급	-			
			소방분야경력	8			
			참여분야경력	8			
				4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신용도	10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감리업체	4			
			참여감리원	3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기술개발실적		4			
		기술개발투자실적		4			
		교육실적		2			
업무중첩도	10	책임감리원		7			
		보조감리원		3			
교체빈도	5	감리업체		2.5			
		참여감리원		2.5			
작업계획 및 기법	5	과업수행계획		3			
		작업기법		2			
가점	2	지역		1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합계							

신청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 · 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 ·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가. 참여 감리원</td><td>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td><td>50</td><td></td></tr>
<tr><td></td><td>가) 책임감리원
(1) 등급</td><td>[30]
(-)</td><td>○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td></tr>
<tr><td></td><td>(2) 소방분야 경력</td><td>(12)</td><td>○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table>
<tr><td>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td><td colspan="5">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td></tr>
<tr><td>100억원 이상</td><td>7 이상</td><td>7 미만
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td></tr>
<tr><td>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td><td>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td></tr>
<tr><td>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td><td>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
2 이상</td><td>2 미만</td></tr>
<tr><td>3억원 미만</td><td>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
2 이상</td><td>2 미만
1 이상</td><td>1 미만</td></tr>
<tr><td>점 수</td><td>12</td><td>11</td><td>10</td><td>9</td><td>8</td></tr>
</table></td></tr>
<tr><td></td><td>(3) 참여분야 경력</td><td>(12)</td><td>○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table>
<tr><td>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td><td>등 급</td><td colspan="5">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td></tr>
<tr><td rowspan="3">100억원 이상</td><td>특급(소방기술사)</td><td>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td></tr>
<tr><td>특급</td><td>7 이상</td><td>7 미만
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td></tr>
<tr><td>고급</td><td>8 이상</td><td>8 미만
7 이상</td><td>7 미만
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td></tr>
<tr><td rowspan="3">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td><td>특급(소방기술사)</td><td>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
2 이상</td><td>2 미만</td></tr>
<tr><td>특급</td><td>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td></tr>
<tr><td>고급</td><td>7 이상</td><td>7 미만
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td></tr>
<tr><td rowspan="3">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td><td>특급(소방기술사)</td><td>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
2 이상</td><td>2 미만
1 이상</td><td>1 미만</td></tr>
<tr><td>특급</td><td>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
2 이상</td><td>2 미만</td></tr>
<tr><td>고급</td><td>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td></tr>
<tr><td>3억원 미만</td><td>특급</td><td>4 이상</td><td>4 미만</td><td>3 미만</td><td>2 미만</td><td>1 미만</td></tr>
</table></td></tr>
</table>

			3 이상	2 이상	1 이상	
	고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12	11	10	9	8

(6) ○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특급(소방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소방기술사)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소방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	특급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고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6	5.7	5.4	5.1	4.8

산출근거 (별첨 1)	**- 소방분야경력 : 일 (년)** **-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 일 (년)** **- 참여분야경력(감리 및 공사감독등) : 일 (년)**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가. 참여 감리원</td><td>나) 보조감리원</td><td>[20]</td><td></td></tr>
<tr><td></td><td>(1) 등급</td><td>(-)</td><td>○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국가등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td></tr>
<tr><td></td><td>(2) 소방분야 경력</td><td>(8)</td><td>○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table>
<tr><td>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td><td colspan="5">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td></tr>
<tr><td>100억원 이상</td><td>7 이상</td><td>7 미만
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td></tr>
<tr><td>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td><td>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td></tr>
<tr><td>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td><td>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
2 이상</td><td>2 미만</td></tr>
<tr><td>3억원 미만</td><td>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
2 이상</td><td>2 미만
1 이상</td><td>1 미만</td></tr>
<tr><td>점 수</td><td>8</td><td>7.7</td><td>7.4</td><td>7.1</td><td>6.8</td></tr>
</table></td></tr>
<tr><td></td><td>(3) 참여분야 경력</td><td>(8)</td><td>○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table>
<tr><td>구 분</td><td>5년 이상</td><td>5년 미만
4년 이상</td><td>4년 미만
3년 이상</td><td>3년 미만</td></tr>
<tr><td>점 수</td><td>8.0</td><td>7.7</td><td>7.4</td><td>7.1</td></tr>
</table></td></tr>
<tr><td></td><td></td><td>(4)</td><td>○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table>
<tr><td>구 분</td><td>5년 이상</td><td>5년 미만
4년 이상</td><td>4년 미만
3년 이상</td><td>3년 미만</td></tr>
<tr><td>점 수</td><td>4.0</td><td>3.8</td><td>3.6</td><td>3.4</td></tr>
</table></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
(별첨 2)</td><td>보조</td><td>- 소방분야경력 : 일 (년)
-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 일 (년)
- 참여분야경력(감리 및 공사감독등) : 일 (년)</td></tr>
<tr><td>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td><td>실적금액</td><td>10
[10]</td><td>○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감리대가금액 기준) 대비 누계실적평가
<table>
<tr><td>구 분</td><td>점 수</td></tr>
<tr><td>100% 이상</td><td>10</td></tr>
<tr><td>80% 이상 100% 미만</td><td>9</td></tr>
<tr><td>60% 이상 80% 미만</td><td>8</td></tr>
<tr><td>40% 이상 60% 미만</td><td>7</td></tr>
<tr><td>40% 미만</td><td>6</td></tr>
</table></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
(별첨 3)</td><td colspan="2">누계실적금액 : 원</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다.신용도</td><td></td><td>10</td><td></td></tr>
<tr><td></td><td>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td><td>[7]</td><td></td></tr>
<tr><td></td><td>가) 감리업체</td><td>(4)</td><td>○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td></tr>
<tr><td></td><td>나) 참여감리원</td><td>(3)</td><td>○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td></tr>
<tr><td></td><td>2) 재정상태 건실도</td><td>[3]</td><td>○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td></tr>
<tr><td></td><td>가) 자본비율</td><td>(1)</td><td>-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예 시>
<table>
<tr><td>구 분</td><td>100% 이상</td><td>100% 미만 75% 이상</td><td>75% 미만 50% 이상</td><td>50% 미만 25% 이상</td><td>25% 미만</td></tr>
<tr><td>점 수</td><td>1.0</td><td>0.85</td><td>0.70</td><td>0.55</td><td>0.4</td></tr>
</table></td></tr>
<tr><td></td><td>나) 유동비율</td><td>(2)</td><td>○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예 시>
<table>
<tr><td>구 분</td><td>100% 이상</td><td>100% 미만 75% 이상</td><td>75% 미만 50% 이상</td><td>50% 미만 25% 이상</td><td>25% 미만</td></tr>
<tr><td>점 수</td><td>2.0</td><td>1.7</td><td>1.4</td><td>1.1</td><td>0.8</td></tr>
</table></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 colspan="2">입찰참가제한 감리업체 :
참여감리원 :
자본비율 :
유동비율 :</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td><td></td><td>10</td><td></td></tr>
<tr><td></td><td>1) 기술개발
실적</td><td>(4)</td><td>ㅇ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예 시>
<table><tr><th>구 분</th><th>5년 이하</th><th>5년 초과
10년 이하</th><th>10년 초과 20년
이하</th></tr><tr><td>특 허</td><td>100%</td><td>80%</td><td>60%</td></tr><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table>ㅇ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ㅇ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td></tr>
<tr><td></td><td>2) 기술개발
투자 실적</td><td>(4)</td><td>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예 시>
<table><tr><th>구 분</th><th>3% 이상</th><th>3.0% 미만
2.5% 이상</th><th>2.5% 미만
2.0% 이상</th><th>2.0% 미만
1.5% 이상</th><th>1.5% 미만</th></tr><tr><td>점 수</td><td>4</td><td>3.5</td><td>3.0</td><td>2.5</td><td>2.0</td></tr></table></td></tr>
<tr><td></td><td>3) 교육 실적</td><td>(2)</td><td>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td></tr>
<tr><td colspan="3">산출근거</td><td>기술개발실적: (산출식 기재)
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교육훈련 : (산출식 기재)</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마. 업무
중첩도</td><td></td><td>10
(10)</td><td>○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table><tr><td>구 분</td><td>책임감리원</td><td>보조감리원</td></tr><tr><td>점 수</td><td>7</td><td>3</td></tr></table>-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 (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td></tr>
<tr><td colspan="2" rowspan="2">산출근거</td><td colspan="2">책임감리원 :</td></tr>
<tr><td colspan="2">보조감리원 :</td></tr>
<tr><td>바. 교체빈도</td><td>1) 감리업체</td><td>5
(2.5)</td><td>○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예 시>
<table><tr><td>교체빈도 (%)</td><td>10% 미만</td><td>10% 이상
20% 미만</td><td>20% 이상
30% 미만</td><td>30% 이상</td></tr><tr><td>점 수</td><td>2.5</td><td>2</td><td>1.5</td><td>0</td></tr></table></td></tr>
<tr><td></td><td>2) 참여감리원</td><td>(2.5)</td><td>○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 · 관리가 완료 된 날부터 적용한다.</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 colspan="2"></td></tr>
<tr><td>사. 작업계획
및 기법</td><td>1) 과업수행계획</td><td>5
(3)</td><td>○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 · 품질 · 안전 · 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 제출의 경우: <예 시>
<table><tr><td>구분</td><td>수</td><td>우</td><td>미</td><td>양</td><td>가</td><td>미제출</td></tr><tr><td>점수</td><td>3</td><td>2.7</td><td>2.4</td><td>2.1</td><td>1.8</td><td>0</td></tr></table></td></tr>
<tr><td></td><td>2) 작업기법</td><td>(2)</td><td>○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 · 제출의 경우: <예 시>
<table><tr><td>구분</td><td>수</td><td>우</td><td>미</td><td>양</td><td>가</td><td>미제출</td></tr><tr><td>점수</td><td>2</td><td>1.8</td><td>1.6</td><td>1.4</td><td>1.2</td><td>0</td></tr></table></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 colspan="2">절대평가 :</td></tr>
</table>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지역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책임감리원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산출근거		**지 역 :** **책임감리원 :** **부 실 벌 점 :**

[별첨 1]

감리원 경력확인서(총괄 : 성명)

1) 소방분야 경력

담당업무	시작일	종료일	근무처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2-1) 참여분야 경력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2-2) 참여분야 경력 :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같거나 유사한 용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당하는 실적)
- 업무분야가 전기/기계를 모두 수행한 경력만인정(전기 또는 기계분야 단독경력 불인정)

[별첨 2]

감리원 경력확인서(보조 : 성명)

1) 소방분야 경력

담당업무	시작일	종료일	근무처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2-1) 참여분야 경력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2-2) 참여분야 경력 :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같거나 유사한 용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당하는 실적)
- 업무분야가 전기/기계를 모두 수행한 경력만인정(전기 또는 기계분야 단독경력 불인정)

[별첨 3]

소방공사(감리)용역수행실적

연번	용 역 명	감리기간		수주금액(억원)		적용요율(%)		환산금액(억원)
		시작일	종료(예정)일	감리비	기성실적(비율)	환산비율	공사종류요율	
합 계								

※ 준공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x 공동도급 참여비율 x 환산비율

※ 진행중인 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x 공동도급 참여비율 x 기성실적(비율) x 환산비율

※ 환산비율 : 전체감리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수행한 기간에 대한 비율(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 공사종류요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100% 이외 실적 70% 인정(단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용도가 공동주택일 경우 100% 인정, 관련서류 증빙)

※ 한국소방시설협회발행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에 등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별첨 4]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 용 역 명 :

○ 소방공사기간 : 20 . . ~20 . . (개월간)

구분	성명	등급	투입일자																																						개월	비고
			연도																																							
			월																																							
책임	○○○																																									
보조	○○○																																									
	○○○																																									
비상주	○○○																																									

※ 참여감리원의 명단(성명)을 기입하여야 함.

[별첨 5]

감리자 선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여수시 공고 제 - 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의9 및「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당해 감리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 점 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 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각 협회에 통보하고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겠으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상업체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검토기준	결산서 구분	결산일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유 동 비 율 (최근년도)	%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매출액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 매 출 액	
총자본회전율	%	총 매 출 액		총 자 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부문) 합계금액		총매출액(소방부문) 합계금액	
		3차년 투자액		3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대상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가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 ] 공인회계사, [ ] 세무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서명 또는 인)
상호(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210㎜×297㎜[백상지 80g/㎡]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10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자	회사명		감리업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본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1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 송신 '(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 시행문 출력 '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3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4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5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참 고 사 항>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참고자료2】

[부표]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적격심사기준 적용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 찰 가 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 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추정가격 5억미만	30	70	**70 - 3×|(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55	82.95%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 찰 가 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 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추정가격 10억미만 5억이상	50	50	**50 - 3×|(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35	82.95%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 찰 가 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 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추정가격 10억이상	70	30	**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15	72.95%

○ㅣㅣ는 절대값 표시임.

【별지 제1호 서식】

총사업비 산출 현황표

(단위: 천원)

구 분			전 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총공사비	순공사비	토목공사	12,168,508			12,168,508
		건축공사	91,274,174			91,274,174
		기계설비공사	10,695,220			10,695,220
		전기공사	8,770,823			8,770,823
		정보통신공사	2,764,847			2,764,847
		소방설비공사	5,418,431	5,418,431		
		소계	131,092,003	5,418,431	-	125,673,572
	일반관리비		13,528,866	1,265,632		12,263,234
	이 윤		12,079,999	1,130,089		10,949,910
	계		156,700,868	7,814,152	-	148,886,716
간접비	설계비		2,778,928		2,778,928	
	감리비		4,150,000		4,150,000	
	일반분양시설경비		8,363,803		8,363,803	
	분담금 및 부담금		9,398,500		9,398,500	
	보상비		-		-	
	기타 사업비성 경비		33,254,269		33,254,269	
	계		57,945,500	-	57,945,500	-
대지비			79,349,382		79,349,382	
부가가치세액			59,859		59,859	
총사업비 계			294,055,609	7,814,152	137,354,741	148,886,716

【별지 제2호 서식】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단위: 천원)

구 분	분야	공종	전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순공사비	토목(13개공사)		12,168,508			12,168,508
	건축(23개공사)		91,274,174			91,274,174
	기계설비(9개공사)		10,695,220			10,695,220
	전기(15개공사)		8,770,823			8,770,823
	정보통신(13개공사)		2,764,847			2,764,847
	소방설비(2개공사)		5,418,431	5,418,431		
일반관리비			13,528,866	1,265,632		12,263,234
이 윤			12,079,999	1,130,089		10,949,910
총 공 사 비			156,700,868	7,814,152	-	148,886,716

예 정 공 정 표(감리배치계획)

▣ 현 장 명 : 여수 소제지구 A-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착공예정일 : 2026년 03월 09일
▣ 공 사 기 간 : 2026년 03월 09일 ~ 2029년 03월 08일 (36개월)
▣ 소 방 공 사 기 간 : 2026년 05월 09일~ 2029년 03월 08일 (34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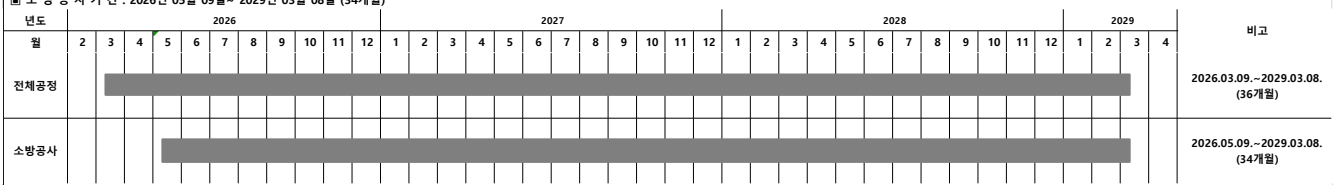

여수시 공고 제2025-3889호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 감리업자[전기] 모집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 3. 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 .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2. 30. ~ 2025. 1. 6.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 여수 소제지구 A-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여수소제피에프브이(주) 대표자 박병엽,이탁기 (☎062)510-2114),
중흥토건(주) 대표자 이경호 (☎062)510-2237)

다. 시 공 자 : 중흥토건(주) 대표자 이경호 (☎062)510-2237),
우미건설(주) 대표자 배영한,조성준,김성철 (☎02)6914-1502),
아주건설(주) 대표자 김수홍,김용환 (☎061)381-6323),
남해종합개발(주) 대표자 김응서,유영걸 (☎062)220-2500)

라. 설 계 자 :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 대표자 김재석 (☎02)2047-3000),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유세한 (☎02)3438-8000),
(주)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이주경 (☎062)574-6467)

마.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여수소제지구 A4
○ 대지면적 : 26,585.0000㎡
○ 연 면 적 : 103,603.8763㎡
○ 규 모 : 공동주택(아파트) 7개동(지하3층, 지상25층) 및 부대 · 복리 · 근린생활시설
○ 세 대 수 : 공동주택(아파트) 584세대
○ 공사기간 : 2026. 03.09. ~ 2029. 03. 08.(36개월)
※ 전기공사기간(예정) : 2026. 05. 09.~2029. 03. 08.(34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5. 12. 12.

바. 사 업 비

○ 총사업비 : 294,055,609천원
○ 대 지 비 : 79,349,382천원
○ 총공사비 : 156,700,868천원(일반관리비, 이윤, 발코니 확장 공사비 포함 / 부가가치세 미포함)
1) 감리 대상 공사비 : 11,181,196천원
2)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 : 145,519,672천원
※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는 건축, 정보통신, 소방 공사의 비용임.
※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4호(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

사. 감리대가 : 830,934,757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806,006,714원(감리대가기준의 97%)
※ 소수점 이하(원단위 미만) 절사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1. 7.(수) 09:00 ~ 2026. 1. 9.(금) 12: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 지정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은 '감리대가' 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 1. 9.(금) 14:00부터,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됨.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우리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https://www.yeosu.go.kr/, 열린시정>여수소식>고시공고)에 결과가 게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절 받지 않음.

6.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1. 12.(월) 09:00 ~ 2026. 1. 14.(수)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 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날인 필)**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기간내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사실확인 서류 제출 후, 사실확인 서류를 PDF로 요청할 수 있음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 15.(목) 09:00 ~ 2026. 1. 19.(월)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

1)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감리자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상기 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절 받지 않음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따라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 가능[영 별표5 제2호(감리업의 영업범위)]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의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2) 상주감리인 · 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 (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지역가점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산업통사자원부고시 제2023-36호(2023. 3. 2.)」 [부표 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별 세부평가방법에 의함.(단, 80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없음)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 첨부) ⇒ 전자입찰 및 개찰 ⇒ 우선순위(예비1~5

순위) 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자 지정 방법

1)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3.2)」및 동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0조의3에 따름.

4)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5)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실적분석" 자료에서 전체「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나. 평균 유동비율 : 125.42%

※ 구비서류 중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및 서약서[별첨4](임감날인)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서식](Ⅰ.총괄표, 비고란에 평점산정근거 기재)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서식]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4)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별첨3]

5)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별지 제6호의2 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3.2)」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2)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 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 업무중첩도

-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7)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8)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 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9)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경력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10)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다.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 업무수행실적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2) 각종 확인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함.

3)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가)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참여사업명 및 직무분야,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또는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함.

나)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하여는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에 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후 산정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복기간에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함.

4)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가)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 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함.

※ 합산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나) 전기 상주감리원(책임, 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 분야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다) 타 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라)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마) 입찰서류 제출 시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하고 허위 기재 시 탈락 처리함.

5)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6)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 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7)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8) [별첨 1]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2]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대하여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별첨 1, 2]양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나.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 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통보 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신청을 할 수 없음.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하 또는 취소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3)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4) 교육: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1,2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바.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분 / 과업수행계획			제출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수			3	2.7	2.4	2.1	1.8	0
평가기준	내용	수행계획	적합		부적합			
		배치계획	적합		부적합			
	쪽수 (표지및간지 제외)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			-

구분 / 작업기법			제출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수			2	1.8	1.6	1.4	1.2	0
평가기준	내용	문제점	적합		부적합			-
		조치사항						
		대책방안						
	쪽수 (표지및간지 제외)		3쪽 내외	2쪽 미만	-			-

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아.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자.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 또는 재선정 절차로 감리업자 선정함.

차.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정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에 감리비를 정산해야 함.

카.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타.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우선순위(1~5순위) 업체의 서류는 우리구 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즉시 폐기하오니 감리자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람.

파.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3.2.)]에 따르며, 공고문의 내용과 위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관련 법령 등을 따른다.

하. 착공 전 시공사에서 요청하는 서류 및 시행사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바랍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 시 홈페이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입찰정보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 나라장터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061-659-4179)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1.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예정공정표 각 1부. 끝.

분 야	접수번호
전 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선정신청

(사업명 : 여수 소제지구 A-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5년 월 일

[회사명 기재]

[별지 제6호의2서식]

(앞 쪽)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		
설계업자	대표자		상 호		
	주 소				

2. 감리업자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감리원수첩번호
책 임				
보 조				
보 조				
보 조				
비상주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구비서류 : 뒤쪽참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첨부서류

1. 자기평가서 1부.
2. 감리비 입찰서 1부.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감리업자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② 행정제재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③ 재무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 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⑤ 작업계획 및 기법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⑥ 교체빈도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⑦ 지 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감리원	① 등급/책임감리원가점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② 경 력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③ 행정제재	감리원경력확인서
	④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⑤ 교육실적	감리원경력확인서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나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

[별지 제7호 서식]

Ⅰ. 총괄표

자 기 평 가 서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배점	신청인	시·도	비고
1. 참여감리원	50	가. 책임 감리원	(1)등급	-			
			(2)경력 및 실적	25			
		나. 보조 감리원	(1)등급	-			
			(2)경력 및 실적	14			
		다. 비상주 감리원	(1)등급	2			
			(2)경력 및 실적	9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3. 신 용 도	10	가.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1)감리업체	4			
			(2)참여감리원	3			
		나. 재정상태건실도	(1)자본비율	1.0			
			(2)유동비율	2.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가. 개발실적		4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4			
		다. 교육실적		2			
5. 업무중첩도	10	가. 상주감리원		6			
		나. 비상주감리원		4			
6. 교체빈도	5	가. 감리업체		2.5			
		나. 참여감리원		2.5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가. 과업수행계획		3			
		나. 작업기법		2			
8. 가점·감점	1.5 1 -5	가. 지 역		1.5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다. 부실벌점		-5			
합 계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이 기준 및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0" 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거짓 등" 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평점은 당해업체가 기재하고, 평점산정근거를 비고란에 기재할 것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 평점란은 자기평점을 기재하고 평가란은 공란(기재하지 말 것)

1. 항목별 평가기준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
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h colspan="2">평가점수
신청자 / 선정권자</th></tr>
<tr><td colspan="2">소 계</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가. 참여감리원</td><td>50</td><td></td><td></td><td></td></tr>
<tr><td rowspan="4">가. 참 여
감리원</td><td>(1) 책 임 감 리원
㈎등급

㈏경 력 및 실적</td><td>[25]
(-)

(25)</td><td>○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배점기준
<table>
<tr><td>규 모</td><td colspan="5">경력년수 및 점수</td></tr>
<tr><td>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td><td>6년이상</td><td>6년미만
5년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
3년이상</td><td>3년미만</td></tr>
<tr><td>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td>10년이상</td><td>10년미만
8년이상</td><td>8년미만6
년이상</td><td>6년미만4
년이상</td><td>4년미만</td></tr>
<tr><td>1,200세대이상</td><td>15년이상</td><td>15년미만
12년이상</td><td>12년미만
9년이상</td><td>9년미만6
년이상</td><td>6년미만</td></tr>
<tr><td>점 수</td><td>25</td><td>22</td><td>19</td><td>16</td><td>13</td></tr>
</table>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 표의 해당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table>
<tr><td>규 모</td><td>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td><td>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td>1,200세대이상</td></tr>
<tr><td>년 수</td><td>2년</td><td>3년</td><td>4년</td></tr>
</table></td><td></td><td></td></tr>
<tr><td>산출근거</td><td colspan="3">(1) 등 급 :
(2) 경력 및 실적 : 일(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td></tr>
<tr><td>(2) 보 조 감 리원
㈎등급

㈏경 력 및 실적</td><td>[14]
(-)

(14)</td><td>○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배점기준
<table>
<tr><td>규 모</td><td colspan="4">경력년수 및 점수</td></tr>
<tr><td rowspan="2">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td colspan="2">3년이상</td><td colspan="2">3년미만
2년이상</td><td>2년미만</td></tr>
<tr><td colspan="2">14</td><td colspan="2">12</td><td>10</td></tr>
<tr><td>1,200세대이상</td><td>6년이상</td><td>6년미만
5년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td></tr>
<tr><td>점 수</td><td>14</td><td>12</td><td>10</td><td>8</td></tr>
</table>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td><td></td><td></td></tr>
<tr><td>산출근거</td><td colspan="3">(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td></tr>
</table>

<table>
<tr><td></td><td>(3) 비 상 주 감리원</td><td>[11]</td><td></td><td></td><td></td></tr>
<tr><td></td><td>(가)등급</td><td>(2)</td><td>○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 배점기준</td><td></td><td></td></tr>
<tr><td></td><td>(나)경력및 실적</td><td>(9)</td><td>
<table>
<tr><td>경 력</td><td>10년이상</td><td>10년미만
7년이상</td><td>7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td></tr>
<tr><td>점 수</td><td>9</td><td>7</td><td>5</td><td>3</td></tr>
</table>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산출근거</td><td>(1) 등 급 :</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2) 경력및실적 : 일(년) ※ 산출근거자료-별첨3</td><td></td><td></td></tr>
<tr><td colspan="2">나. 유사용역 수행실적</td><td>10</td><td></td><td></td><td></td></tr>
<tr><td>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td><td>감리 업체 실적</td><td>(10)</td><td>○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 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배점기준
<table>
<tr><td>규 모</td><td colspan="5">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td></tr>
<tr><td>1,200세대이상</td><td>80이상</td><td>80미만
64이상</td><td>64미만
48이상</td><td>48미만
32이상</td><td>32미만</td></tr>
<tr><td>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td><td>36이상</td><td>36미만
30이상</td><td>30미만
24이상</td><td>24미만
18이상</td><td>18미만</td></tr>
<tr><td>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td><td>12이상</td><td>12미만
9이상</td><td>9미만
6이상</td><td>6미만
4이상</td><td>4미만</td></tr>
<tr><td>점 수</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able>
</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산출근거</td><td>○ 연면적 : ㎡ ※ 산출근거자료-별첨4</td><td></td><td></td></tr>
<tr><td colspan="2">다. 신용도</td><td>10</td><td></td><td></td><td></td></tr>
<tr><td>다.신용도</td><td>(1)입찰참가 제 한 , 영 업정지</td><td>[7]</td><td></td><td></td><td></td></tr>
<tr><td></td><td>(가)감리 업체</td><td>(4)</td><td>○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td><td></td><td></td></tr>
<tr><td></td><td>(나)참여 감리원</td><td>(3)</td><td>○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산출근거</td><td>(1) 감리 업체 :</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2) 참여감리원 :</td><td></td><td></td></tr>
</table>

<table>
<tr><td></td><td>(2)재정상태 건실도</td><td>[3]</td><td></td><td></td><td></td></tr>
<tr><td></td><td>㈎ 자본 비율</td><td>(1.0)</td><td>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배점기준
<table><tr><td>구 분</td><td>100%이상</td><td>100%미만 75%이상</td><td>75%미만 50%이상</td><td>50%미만 25%이상</td><td>25%미만</td></tr><tr><td>점 수</td><td>1.0</td><td>0.85</td><td>0.70</td><td>0.55</td><td>0.4</td></tr></table></td><td></td><td></td></tr>
<tr><td></td><td>㈏ 유동 비율</td><td>(2.0)</td><td>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배점기준
<table><tr><td>구 분</td><td>100%이상</td><td>100%미만 75%이상</td><td>75%미만 50%이상</td><td>50%미만 25%이상</td><td>25%미만</td></tr><tr><td>점 수</td><td>2.0</td><td>1.7</td><td>1.4</td><td>1.1</td><td>0.8</td></tr></table></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산출근거</td><td colspan="3">(1) 자본비율 : = %
(2) 유동비율 : = %</td></tr>
<tr><td colspan="2">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td><td>10</td><td></td><td></td><td></td></tr>
<tr><td>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td><td>(1) 개발 실적</td><td>(4)</td><td>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table><tr><td>구 분</td><td>5년이하</td><td>5년초과 10년이하</td><td>10년초과 20년이하</td></tr><tr><td>특 허</td><td>100%</td><td>80%</td><td>60%</td></tr><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tr><td>전력신기술</td><td>100%</td><td>80%</td><td>-</td></tr></table>※(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기술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td><td></td><td></td></tr>
<tr><td></td><td>(2) 기술개발 투자 실적</td><td>(4)</td><td>○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table><tr><td>구 분</td><td>3%이상</td><td>3.0%미만 2.5%이상</td><td>2.5%미만 2.0%이상</td><td>2.0%미만 1.5%이상</td><td>1.5%미만</td></tr><tr><td>점 수</td><td>4</td><td>3.5</td><td>3.0</td><td>2.5</td><td>2.0</td></tr></table></td><td></td><td></td></tr>
<tr><td></td><td>(3) 교육 실적</td><td>(2)</td><td>○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td><td></td><td></td></tr>
</table>

<table>
<tr><td></td><td>산출근거</td><td colspan="4">가. 개발실적 : = 건 × 배점</td></tr>
<tr><td></td><td></td><td colspan="4">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 %</td></tr>
<tr><td></td><td></td><td rowspan="2">다. 교육실적</td><td colspan="3">-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점</td></tr>
<tr><td></td><td></td><td colspan="3">- 1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점</td></tr>
<tr><td colspan="2">마. 업무중첩도</td><td>10</td><td colspan="4"></td></tr>
<tr><td>마. 업무중첩도</td><td>(1) 상주 감리원</td><td>(6)</td><td colspan="4">○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table><tr><td>구 분</td><td>책임감리원</td><td>보조감리원</td></tr><tr><td>점 수</td><td>4</td><td>2</td></tr></table>※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 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td></tr>
<tr><td></td><td>(2) 비상주 감리원</td><td>(4)</td><td colspan="4">○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table><tr><td>구 분</td><td>6개소미만</td><td>6개소</td><td>7개소</td><td>8개소</td><td>9개소이상</td></tr><tr><td>점 수</td><td>4</td><td>3</td><td>2</td><td>1</td><td>0</td></tr></table>※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td></tr>
<tr><td></td><td>산출근거</td><td colspan="5">가. 상주감리원 :</td></tr>
<tr><td></td><td></td><td colspan="5">나. 비상주감리원 : = 개소</td></tr>
<tr><td colspan="2">바. 교체빈도</td><td>5</td><td colspan="4"></td></tr>
<tr><td>바. 교체빈도</td><td>(1) 감리 업체</td><td>(2.5)</td><td colspan="4">○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table><tr><td>교체빈도 (%)</td><td>10%미만</td><td>10%이상 20%미만</td><td>20%이상 30%미만</td><td>30%이상</td></tr><tr><td>점 수</td><td>2.5</td><td>2</td><td>1.5</td><td>0</td></tr></table></td></tr>
<tr><td></td><td>(2) 참여 감리원</td><td>(2.5)</td><td colspan="4">○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td></tr>
<tr><td></td><td>산출근거</td><td colspan="5">가. 감리업체 : = %</td></tr>
<tr><td></td><td></td><td colspan="5">나. 참여감리원 : = 회 × 배점</td></tr>
</table>

<table>
<tr><td colspan="2">사. 작업계획 및 기법</td><td>5</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사. 작업계획 및 기법</td><td>(1) 과업 수행 계획</td><td>(3)</td><td colspan="3">ㅇ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table><tr><td>구 분</td><td>수</td><td>우</td><td>미</td><td>양</td><td>가</td><td>미제출</td></tr><tr><td>점 수</td><td>3</td><td>2.7</td><td>2.4</td><td>2.1</td><td>1.8</td><td>0</td></tr></table></td><td></td><td></td></tr>
<tr><td>(2) 작업 기법</td><td>(2)</td><td colspan="3">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table><tr><td>구 분</td><td>수</td><td>우</td><td>미</td><td>양</td><td>가</td><td>미제출</td></tr><tr><td>점 수</td><td>2</td><td>1.8</td><td>1.6</td><td>1.4</td><td>1.2</td><td>0</td></tr></table></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산출근거</td><td colspan="4">가. 과업수행계획 :</td></tr>
<tr><td colspan="4">나. 작 업 기 법 :</td></tr>
</table>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평가점수	
				신청자	선정권자
소 계					
가점	(1) 지 역	(1.5)	○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사·광역사·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2) 책 임 감리원	(1)	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산출근거		**(1) 지 역 :**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감점	**부실 벌점**	(-5)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산출근거		**ㅇ 부실벌점 :**		

[별지 제8호 서식]

감리비 입찰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자	회사명		감리업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설계(감리)업체

상 호		업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A÷B (%)	기술개발투자실적(전기부문)		총매출액(전기부문)	
		합계금액(A)		합계금액(B)	
		3차년	투자액	3차년	총매출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총매출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총매출액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별지 제10호 서식]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공사중지 확인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		

2. 감리업자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확인신청 내용

가.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비 고
책 임				
보 조				
비상주				

나. 확인사항

사 유	비 고	확인(√)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재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2개월 이상 공사중지	공사 중지일 : 년 월 일 재공사 예정일 : 년 월 일	

위 사업이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라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공사중지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위 감리원은 현재 ( )월간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공사중지 되었으므로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 1]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구분	경력사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일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책임감리원							
	[부표3-1]제1호 가+나+다목 **소계**				일 년		
	[부표3-1]제1호 라목(안전관리경력) **소계**				일 년		
	합 계				일 년		

구분	경력사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일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보조감리원							
	합 계				일 년		

구분	경력사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일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비상주감리원							
	[부표3-1]제1호 가+나+다목 **소계**				일 년		
	[부표3-1]제1호 라목(안전관리경력) **소계**				일 년		
	합 계				일 년		

[별첨 2]

○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 실적 (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연번	용 역 명	감리기간	연면적(㎡)		적용요율(%)		환 산 연면적 (㎡)	평 가
			주거시설	주거시설외	환산비율 (감리수행기간/ 전체감리기간)	이행비율 (도급비율)		
합 계								

※ 수행실적은 건별로 전체 작성

[별첨 3]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 용 역 명 :

○ 전기공사기간 : 20 . . ~20 . . (개월간)

구분	성명	등급	2018년						2019년												2020년						개월	비고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책임	○○○	특급																									21	예시
보조	○○○	-																										
	○○○	-																										
비상주	○○○	-																										

※ 참여감리원의 명단(성명)을 기입하여야 함.

[별첨 4]

감리자 선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여수시 공고 제 - 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 점 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 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각 협회에 통보하고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겠으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1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 송신 '(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 시행문 출력 '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3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4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5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참 고 사 항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참고자료2】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800세대 미만	30	70	**7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55	**82.95%**
1,200세대 미만	50	50	**5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35	**82.95%**
1,200세대 이상	70	30	**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15	**72.95%**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별지 제1호 서식】

총사업비 산출 현황표

(단위: 천원)

구 분			전 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총공사비	순공사비	토목공사	12,168,508			12,168,508
		건축공사	91,274,174			91,274,174
		기계설비공사	10,695,220			10,695,220
		전기공사	8,770,823	8,770,823		-
		정보통신공사	2,764,847			2,764,847
		소방설비공사	5,418,431			5,418,431
		소계	131,092,003	8,770,823	-	122,321,180
	일반관리비		13,528,866	1,273,372		12,255,494
	이 윤		12,079,999	1,137,001		10,942,998
	계		156,700,868	11,181,196	-	145,519,672
간접비	설계비		2,778,928		2,778,928	
	감리비		4,150,000		4,150,000	
	일반분양시설경비		8,363,803		8,363,803	
	분담금 및 부담금		9,398,500		9,398,500	
	보상비		-		-	
	기타 사업비성 경비		33,254,269		33,254,269	
	계		57,945,500	-	57,945,500	-
대지비			79,349,382		79,349,382	
부가가치세액			59,859		59,859	
총사업비 계			294,055,609	11,181,196	137,354,741	145,519,672

【별지 제2호 서식】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단위: 천원)

구 분	분야	공종	전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순공사비	토목(13개공사)		12,168,508			12,168,508
	건축(23개공사)		91,274,174			91,274,174
	기계설비(9개공사)		10,695,220			10,695,220
	전기 (15개공사)	배관공사	1,224,930	1,224,930		
		배선공사	194,451	194,451		
		외등설치공사	201,001	201,001		
		간선공사	2,665,249	2,665,249		
		분,배전반공사	1,134,553	1,134,553		
		수변전설비공사	348,775	348,775		
		트레이설치공사	176,818	176,818		
		레이스웨이설치공사	605,000	605,000		
		발전기설비공사	1,961,401	1,961,401		
		고압인입공사	80,724	80,724		
		기계실동력설비공사	16,309	16,309		
		배선기구설치공사	24,742	24,742		
		조명기구설치공사	60,651	60,651		
		접지공사	1,207	1,207		
		피뢰설비공사	75,012	75,012		
		소계	8,770,823	8,770,823	-	-
	정보통신(13개공사)		2,764,847			2,764,847
	소방설비(2개공사)		5,418,431			5,418,431
일반관리비			13,528,866	1,273,372		12,255,494
이 윤			12,079,999	1,137,001		10,942,998
총 공 사 비			156,700,868	11,181,196	-	145,519,672

예 정 공 정 표(감리배치계획)

▣ 현　장　명 : 여수 소제지구 A-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착공예정일 : 2026년 03월 09일
▣ 공 사 기 간 : 2026년 03월 09일 ~ 2029년 03월 08일 (36개월)
▣ 전 기 공 사 기 간 : 2026년 05월 09일~ 2029년 03월 08일 (34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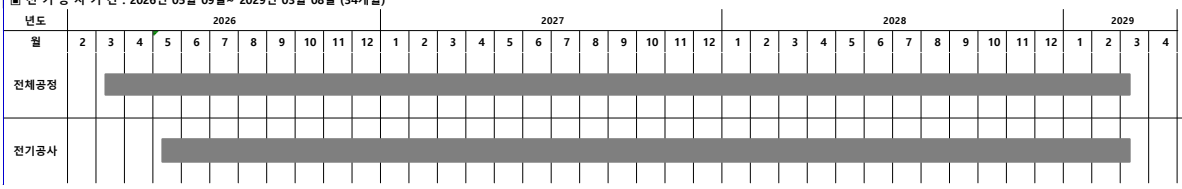

여수시 공고 제2025-3895호

2024년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폐업어선 기관·장비 등 일괄 매각 전자입찰 공고(2차)

『2024년 정치망어업 감척사업』으로 폐업되는 어선의 기관, 장비 등 일체를 매각하고자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여 수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일괄입찰】

가. 건명: 감척어선의 기관, 장비, 의장품 등 매각

나. 매각대상 물건: 감척어선 1척의 기관, 장비 등 **총 12점(붙임 목록 참고)**

- 기관·전자장비 보관 장소 : 감척대상 어선의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음
- 사업포기 등으로 매각대상 기관·장비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매각대금 낙차율에 따라 공제 후 계약함.
- 매각 대상 물품은 우리 시와 계약한 어선해체처리업자와 협의 후 인수한다.
(도난 우려가 있는 전자장비, 의장품 등에 대해서는 대상어선 인수와 동시에 확인 후 어선해체처리업자와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전자장비, 의장품 등을 선체로부터 분리·인수 할 수 있다.)

다. 매각 예정가격 : **₩ 17,305,800원(선체를 제외한 감정평가액 173,058,000원의 10%)**

라.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일시

- 2025. 12. 31.(수) 09:00 ~ 2026. 1. 6.(화) 17:00

마. 입찰서 제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http://www.onbid.co.kr

바. 개찰 일시 : 2026. 1. 7.(수) 14:00

사. 개찰 장소 : 여수시청 어업생산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일반·법인사업자, 개인)로서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함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 "온비드:onbid"라 함)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입찰이며, 입찰서는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입찰서는 입찰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시작시간 및 입찰 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 입찰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나.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신한위탁" 또는 "하나위탁"** 입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 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시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 시 입찰 무효

마.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 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금(분할납부 불가)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 창구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액 미만이거나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금액을 입찰하여 낙찰자가 2인 이상이면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합니다.

7. 전자입찰 참가 준비 등의 책임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개인)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onbid) 운용 담당자(☎1588-5321)에게 문의하시고

나. 은행시스템 피크(Peak)시간대의 경우, 은행(온비드 지정 은행계정)의 업무처리 지연 및 시스템 처리 용량 저하로 보증금 납부 및 투찰 불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찰자께서는 원활한 투찰을 위해 피크시간대를 피하고 가능하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시스템 피크 시간대 : 오전 10:30~11:30, 오후 14:00~16:00(평일 기준)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 시스템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연기 및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상(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에 게재합니다.

9.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시금고로 귀속됩니다.

나. **매각 물건은 계약 체결 후부터 우리 시와 계약된 선박해체업체가 대상어선을 인수하면 즉시 분리, 인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지연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등은 낙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인수지연 시 우리 시와 계약된 선박해체업체에서 분리보관 -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낙찰자 책임)

다. 기관·장비 매매대금은 우리 시에서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0. 매각물품의 인계 · 인수

가. 낙찰자는 우리 시와 협의(일시, 장소, 목록확인)하여 어선 소유자와 함께 대상어선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인수하여야 합니다.

나. 매각물품 인수 시 인계자와 공동으로 「기관 · 장비 등 인수인계서(별지 2호 서식)」 3부를 작성하여 매각물품 인계자와 우리 시에 각 1부를 제출하며, 쌍방의 이의 없는 매각물품에 대하여는 인계 · 인수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는 매각 물품의 분리(단, 기관 등 선박 구조물의 철거는 해체처리업체 부담), 운반 등 인수에 소요되는 경비, 운반 시 발생 되는 사고 및 인수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제반 부담사항에 대하여는 낙찰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매각물건 해체(분리) 작업은 반드시 계약된 어선해체처리업체(조선소 등)와 사전 협의하여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일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선체 침몰, 해양오염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선체의 파손, 침수, 해양오염과 무관한 물품 및 장비는 해체처리를 위한 조선소 상가 이전이라도 협의를 통해 해체(분리) 작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매각물건 해체(분리)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해체(분리)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낙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천재지변, 해체처리업체 선정 지연(유찰 등), 어선의 해체작업 현장여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각물품의 인계가 늦어질 경우 낙찰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낙찰물건이 인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매각물건 품목별 입찰 산정금액으로 감액 정산하여 차감액을 낙찰자에게 반환하되 이자 부분은 제외합니다.

아. 낙찰 후 공매 물건의 하자 등이나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 등으로 취급 제한이나 행정상, 법률상 규제 등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 공고조건, 인터넷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등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이후 기관·장비, 의장품 등의 상태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입찰자는 사전에 매각 물건조서와 물건의 수량, 상태, 매각 물건의 분리 철거 보관 중 훼손 여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 후 우리 시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별도의 현장 설명은 없습니다.**

※ 매각물품의 실물 확인을 희망할 경우 여수시청 어업생산과 양식정책팀(☎ 061-659-3933)에 사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매각 물건은 선체의 신속한 해체를 위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어선소유자 및 폐선처리업자의 입회하에 폐선장소(조선소) 또는 인계장소, 여수시가 지정한 장소에서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인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제반사항은 낙찰자가 전적으로 부담 및 책임져야 하며, 낙찰 물건을 선체로부터 분리(철거)후 인수하여야 합니다. (인계·인수확인서가 작성되면 인계·인수가 종료된 것으로 하며 만약, 미이행 시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집행주체에서 임의로 처리)

마. 입찰공고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바.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온비드:onbid)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입찰방법(입찰자) 문의처: ☎1588-5321(온비드 시스템관리자)

○ 기관·전자장비 등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

- 여수시 어업생산과 양식정책팀 ☎061-659-3933(담당자: 김지은)로 문의

○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http://www.onbid.co.kr "온비드" 시스템

- 입찰서 제출 여부: 인터넷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인터넷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 입찰 결과: 인터넷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결과

붙 임 : 1. 매매계약서 1부.
2. 기관·장비 인수인계서 1부.
3. 기관·장비 매각 명세표 1부.(별첨) 끝.

[붙임1]

폐업어선의 기관 · 장비 등의 매매계약서

□ 물품의 표시 : 폐업어선(　　)의 기관·장비 등 (* 별지 목록)

위 폐업어선의 기관·장비 등에 대하여 매도인(여수시장, 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 기관·장비 등(이하 “장비 등”이라 한다)의 매매에 있어 “을”은 다음의 매매대금을 “갑”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완납하고, 매각으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

매매대금	**금　　원(금　　원)**

제2조: 장비 등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갑”이 지정하는 일자, 장소에서 인수한다. 단, 천재지변, 해체처리업체 선정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물건의 인수가 지연될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물건의 인수 지연에 따른 비용은 낙찰자 부담으로 한다.

제3조: “을”은 천재지변 또는 “갑”의 사정으로 장비 등의 인수가 지연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을”이 계약 내용을 위약할 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을”이 “갑”에게 납부한 매매대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 “을”은 장비 등의 매각입찰 공고내용에 게재한 매각대상 장비 등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일부 손실이나 훼손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전 현장 확인 후 응찰하였으므로 인수·인계 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전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으며, 변상 조치는 불가함)

제6조: 감척어선의 장비 등의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7조: 계약이후 입찰자격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나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낙찰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을”이 “갑”에게 이미 납부한 매매대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을”은 장비 등의 인수 후에 장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법령 위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타인의 재산손괴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을 지며 “갑”에게 일체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

제9조: “을”은 매각입찰 공고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및 계약서 등의 해석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 년　　월　　일

매 수 인 (을)	성　명:　　(인) 주　소:
매 도 인 (갑)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장**　　(인)

[붙임2]

인 수 인 계 서

□ 일 시 : 202 년 월 일 □ 장 소 :

어 선 의 내 역	선 명		어선번호	
	총 톤수		재 질	□ 목선 □ FRP
	기관의종류	□육상디젤 □디젤	기관마력	

기관,장비 등 ※ 감정평가 목록 중 미인수 품목만 기재	연번	품목 및 규격	수량	미인수 시 사유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 감정평가 목록과 상이하지 않을 시 품목 및 규격, 수량 기재란에 **"감정평가 목록과 같음"**으로 기재

○ 인계자(어선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또는 서명)

○ 인수자(해체업체) 주소 :

성명 : (인 또는 서명)

○ 기관·장비 매수자(매수업체) 주소 :

성명 : (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총 괄 표

구분	감정평가액(시설물)	어선 수량	어선당 평균가격
기관	5,401,500	1	5,401,500
의장품	7,444,500	1	7,444,500
어구	160,212,000	1	160,212,000
합계	173,058,000		173,058,000

* 선체, 닻은 매각 물품에서 제외

NO. 1 (선명: 제1금성호, 소유자: 형0근외1)

연번	품 명	규격 · 형식	제작소	제작 일자	수량	단위	평가금액(원)	매각금액(원)
(1)	주기관 (Main Engine)	1) 육상디젤 8기통 2) 동력전달장치 3) 축계장치 4) Std' Acc's	현대	미상	1	식	5,401,500	540,150
(2)	조타기 (Steering System)	Hyd' Type	대동	미상	1	식	542,500	54,250
(3)	나침반 (Magnetic Compass)	150mm	미상	미상	1	대	43,000	4,300
(4)	선회창 (Clear View Screen)	-	미상	미상	1	대	84,500	8,450
(5)	플로터 (GPS Plotter)	N100	삼영이엔씨	2013.05.	1	대	371,000	37,100
(6)	AIS	AIS-50B	삼영	2017.02.	1	대	365,500	36,550
(7)	사이드로라 (Side Roller)	M/E Belt Driven Roll * 2ea	미상	미상	1	식	462,000	46,200
(8)	전기시설 (Electric Equipment)	1) Switch Board 2) Std' Acc's	미상	미상	1	식	212,000	21,200
(9)	캡스턴로라 (Roller)	Hyd' Type Roll * 2ea (단가: 1,075,000원)	미상	미상	2	식	4,300,000	430,000
(10)	캡스턴로라 (Roller)	Hyd' Type Roll * 1ea	미상	미상	1	식	1,064,000	106,400
(11)	정치망	사계*1틀, 멸그물*2틀, 원통그물*2틀, 외승망*2틀, 운동장*2틀, 장등*2틀, 기타부속 포함	미상	미상	1	식	160,212,000	16,021,200
	합 계				**12**		**173,058,000**	**17,305,800**

여수시 훈령 제436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여수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